

# 예술계열 취업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	기	준
공동연구자	강	영	혜
	오	세	곤
	박	진	영
	이	경	학
연구조원	엽	승	현

한국교육개발원



## 머 리 말

최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취업률, 고용률 및 실업률의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새 정부에서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의 창출, 일하는 방식의 개혁 등을 통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업률, 실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데 교육-노동 현장간의 수요 및 공급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수년간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최근 취업률이 대학평가, 대학 구조조정 등의 주요 지표로써 활용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일선 대학에서는 대학 학과 계열간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취업률 지표의 산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보다는 자신의 꿈을 위해 미래를 투자하기 원하는 예술계열 학과에서 이러한 요구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대학평가에서 예술계열 학과 평가 시 취업률을 제외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서도 예술계열 학과의 진로상황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인창작활동종사자’라는 취업자 인정기준을 통하여 예술계열 취업률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정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서도 예술계열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자 인정기준을 개정을 통한 정확한 진로 정보 제공을 목표로 본 연구가 시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개정안을 바탕으로 향후 예술계열 학과의 성과 평가에 정확성과 신뢰성의 증대,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 및 학부모에게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 및 향후 고등교육기관 및 예술계열 학과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원해준 교육부, 한국 예술대학 학회 총연합회 관계자 및 본원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 9월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원 장 백 순 근

## 연 구 요 약

- 우리나라는 ‘03년 이후 고용률이 60% 초반에 머무는 정체기가 지속되어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교육-노동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04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정확하고 신뢰로운 통계 생산을 위해 2010년부터는 공공DB연계 조사로 실시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교육부 및 정부부처, 국회 등에서 취업 대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로 그 활용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예술계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공공 DB 연계 취업률 조사의 적절성 진단 및 보완 필요성 제기됨.
- 이에 예술계열 학과에서는 예술계열 학과가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 ‘예술활동지수(가칭)’을 통하여 각종 평가에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예술활동 학과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부족하여 부득이 취업률을 기반으로 학과 성과가 평가되고 있는 실정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도 개인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정의와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졸업자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예술계열 학과의 취업자 인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계열 학과의 현실을 반영한 취업률을 생산하기 위한 취업자 인정기준 및 인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음.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고용 관련 통계 조사 현황, 예술계열 분류와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등의 문헌 연구

및 사례 분석, 예술계열 학과 졸업자들의 진로현황 파악을 위한 예술계열 학과 교수, 졸업생 및 예술계열 관련 단체·기업 전문가에 대한 면담조사, 예술계열 학과의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진로지도, 예술계 세부 분야별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 등의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기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및 국세DB에 연계하여 직장건강보험이나 국세청 DB에 등재된 졸업자를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외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술계열에서는 인정받는 졸업자가 많지 않아 2011년부터 ‘개인창작활동종사자’ 항목을 신설하여 예술 관련 직업군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추가로 인정하였음.
-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에 대해 예술계열 학과 졸업생 및 교수들은 인정 항목과 인정 기준이 대학을 갓 졸업한 졸업생이 갖추기에는 지나치게 좁은 인정기준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계열 학과에서 제기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개정안을 제시함.
- 취업 통계 조사는 정확성의 확보를 위해 공공DB 연계 등의 객관적 검증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기준인지 여부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음.
- 이런 원칙하에 장소와 횟수 위주로 인정기준을 완화하였고 연극, 영화 등의 스태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자 범위를 넓혔음.
-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제외되었던 영화 분야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의 인정을 위해 영상제작물 분야를 신설하였으며 공연, 전시 및 영상제작물에 종사하는 취업자 중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스태프에 대한 인정기준이 마련되고, 웹툰이나 e-book과 같은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 인정기준도 마련하였음.

# 차 례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3
3. 연구 방법 .....	4
II. 취업통계조사 현황 및 유관사례 분석 .....	8
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8
2. 국내외 취업 관련 통계조사 현황 .....	15
3. 국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 .....	18
III. 예술계열 직업분류와 예술계 노동시장의 실태 .....	20
1. 국내외 예술인의 정의 및 인정범위 .....	20
2. 국내외 예술인 실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	38
3. 예술인 정의 및 인력구조의 시사점 .....	50
IV. 예술계열 취업자 인정기준의 개선방안 .....	52
1. 예술계열 취업자 인정기준 .....	52
2. 예술계열 학과 취업자 인정 기준의 문제점 진단 .....	53
3.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개정안 .....	60
4. 향후 과제 .....	65
V. 요약 및 정책제언 .....	66
1. 연구 요약 .....	66
2. 정책 제언 .....	68

참고문헌 ..... 76

[붙임1]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설문지 ..... 78

[붙임2]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설문결과 분석 ..... 96

[붙임3] 「예술인복지법」 예술활동증명 인정지침(안) ..... 113

[붙임4] 예술활동지수(안) ..... 119

## 표 차 례

<표 I-1> 지역별 응답자 현황(1) .....	6
<표 I-2> 지역별 응답자 현황(2) .....	6
<표 I-3> 학제별 응답자 현황(1) .....	7
<표 I-4> 학제별 응답자 현황(2) .....	7
<표 I-5> 전공영역별 응답자 현황 .....	7
<표 II-1> 취업자 인정 기준 .....	8
<표 II-2> 12.31일 취업통계조사 졸업 후 상황 .....	10
<표 II-3> 국내외 ‘졸업 후 상황’ 조사 사례 비교 .....	13
<표 III-1> 예술인복지법 관련 법령 .....	20
<표 III-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관련 법령 .....	22
<표 III-3> 한국고용정보원의 예능강사 직업예시 .....	23
<표 III-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인정기준 .....	24
<표 III-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증빙자료 기준 .....	27
<표 III-6> 취업통계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입기준 항목 비교 .....	28
<표 III-7> 소득세법 중 관련 법령 .....	29
<표 III-8>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분류 항목 .....	30
<표 III-9> 한국표준직업분류(2009)에서의 예술인 직업구분 .....	31
<표 III-10> 한국표준산업분류(6차 개정)에서의 예술인 산업구분 .....	33
<표 III-11> 미국의 예술인 인정범위 .....	34
<표 III-12> 영국의 예술인 인정범위 .....	35
<표 III-13> 캐나다의 예술인 인정범위 .....	36
<표 III-14> 호주의 예술인 인정범위 .....	37
<표 III-15> 국내 유사기관의 예술시장 및 인력실태조사 비교 .....	40
<표 III-16> 지자체의 예술인적자원DB구축 사례 .....	42
<표 III-17> 예술인적자원 DB직종 분류체계(2009년 기준) .....	43

<표 III-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분야 장르 .....	45
<표 III-19> 국내 문화예술관련 지수 연구 사례(김소영 외5, 2013) .....	46
<표 III-20> 국외 문화예술관련 지수 연구 사례 .....	47
<표 III-21> 국외 예술시장 망 인력DB구축 조사 사례 .....	49
<표 IV-1>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조건 .....	53
<표 IV-2>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변동 사항 .....	61
<표 IV-3>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 변동 사항 .....	62
<표 IV-4>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조건(개정) .....	63
<표 IV-5>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 .....	64
<표 V-1> 교육부의 취업률활용 평가 지표 현황 .....	71

## 그림 차례

[그림 II-1] 6.1일과 12.31일기준일 취업통계조사 취업률 비교 .....	10
[그림 IV-1] 인정기준 타당성 여부(출판 및 출판) .....	55
[그림 IV-2] 인정기준 타당성 여부(시나리오) .....	55
[그림 IV-3] 인정기준 타당성 여부(저작권) .....	55
[그림 IV-4] 장소의 타당성 여부(공연) .....	56
[그림 IV-5] 장소의 타당성 여부(전시) .....	57
[그림 IV-6] 횡수의 타당성 여부(공연) .....	57
[그림 IV-7] 횡수의 타당성 여부(전시) .....	58
[그림 IV-8] 증빙자료 타당성 여부(공연) .....	59
[그림 IV-9] 증빙자료 타당성 여부(전시) .....	59
[그림 IV-10] 증빙자료 타당성 여부(출판 및 출판) .....	5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취업통계자료의 활용도 증가에 상응하는 취업률 조사의 신뢰성 확보 필요성
  -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03년 이후 고용률이 60% 초반에 머무는 정체기가 지속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도되는 다양한 정부정책이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수립, 관리되기 위해서는 교육-노동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04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로운 통계 생산을 위해 2010년부터는 공공DB연계 조사로 실시되고 있음.
  - 건보 DB를 비롯한 공공DB 연계조사로 변경된 이후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교육부 및 정부부처, 국회 등에서 취업대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로 그 활용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예술계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공공 DB 연계 취업률 조사의 적절성 진단 및 보완 필요성 제기
  - 최근 졸업자 취업통계정보는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도가 더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 자체적인 구조조정의 기초 정보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예술계열 학과의 경우 예술계열 학과 졸업생이 취업하는 주요 사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취업통계에서 제시하는 취업자의 기준인

건강보험DB 가입이 어렵다는 현실과 취업자 인정기준과의 괴리로 인해 취업률이 성과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경쟁률 100대1 인기학과지만 가시방석, 이유는…” , 세계일보( ‘13.9.25)).

- 이러한 학교현장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 항목을 도입하여 예술계열 학과 졸업자들의 취업자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예술계열 학과 관계자들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의 인정기준 또한 대학의 신규 졸업자가 갖추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음.(“화가 꿈 때문에 선택 … 취업률 잣대 년센스” , 중부매일신문( ‘13.5.28)).
- 따라서 예술계열 학과의 교육 목적에 맞는 졸업자 진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취업통계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상황임.

○ 예술계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학 평가 제도 운영

- 최근 대학 구조조정, 대학평가 및 대학 재정지원의 근거자료로써 취업률 지표가 매우 비중이 높은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술계열의 취업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취업률을 활용한 평가의 불합리성을 관련 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예술대까지 취업률로 평가하다니…” , 한국일보( ‘14.4.7)).
- 이에 예술계열 학과에서는 예술계열 학과가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 ‘예술활동지수(가칭)’ 을 통하여 각종 평가에 활용되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예술활동 학과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부족하여 부득이 취업률을 기반으로 학과 성과가 평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예술계열 학과의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예술계열 학과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성과 평가 기준이 요구됨.

○ 예술계열 학과의 정확한 취업률 조사를 위한 특성화된 취업률 조사 프로세스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등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예술인복지법’ 제정 등으로 예술인들의 권리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객관적 정의와 인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도 개인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정의와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졸업자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다른 유관 기관의 통계 작성에 적용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 기준이나 예술단체에서의 예술인 인정기준 등과의 비교를 통해 예술계열 학과의 취업자 인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취업통계조사에서 예술계열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로운 통계 산출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의 재규정을 통해 예술계열 졸업생들의 진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예술계열 학과 졸업생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예술계열 졸업생들의 정확한 취업률을 생산하기 위한 취업자 인정기준 및 인정 방안을 탐색하고, 예술계열 학과의 성과 평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취업 및 고용관련 타 기관의 통계조사 사례 파악
    - 통계청 고용통계 등 국내의 유사 통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및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의 취업, 고용관련 통계 조사에 대한 문헌 분석
    - 국제기구, 통계청 등의 직업·산업 분류 및 대교협 학과분류 등 각종 분류상에서의 예술계열 분류에 대한 문헌 검토
  - 예술계 취업자 인정 기준 사례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예술인 복지재단 및 문화예술단체의 예술인 인정 범위 및 인정기준에

대한 검토

- 세부 분야별 예술계열 학과 대상으로 현행 취업자 인정기준(건강보험 DB 가입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등) 적용의 문제점 파악 및 적절성 분석
- 현행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의 문제점 진단

○ 취업률 중심의 예술계열 대학 평가의 문제점 진단

- 예술계열 학과의 교육목표 및 교육성과에 대한 학교 현장(교수, 학생들)의 인식
- 교육부의 각종 평가에 적용되는 현행 취업률 지표에 대한 문제인식

○ 예술계열 취업률 조사 및 성과평가의 개선방안 탐색

- 예술계열 교육목표에 적합하고 예술계열 졸업자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취업률 지표 및 취업자 인정기준의 개선안 탐색
- 예술계열 학과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탐색

### 3.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사례 분석

- 국내외 고용 관련 통계조사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토
- 예술계열 분류와 진로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 국내외 각종 분류표 상에서의 예술계열 분류 사례 분석
- 국내외 주요 통계 조사 상에서의 예술계 종사자 정의 및 인정 기준 검토

○ 면담 조사

- 예술계열 학과 졸업자들의 진로현황 파악을 위한 예술계열 학과 교수, 졸업생 및 예술계열 관련 단체·기업 전문가에 대한 면담조사 실시
- 예술계 세부 계열별로 그룹핑(음악, 실용음악, 무용, 연극, 미술, 디자인 등)

- 일시 : 2014. 8 19(화), 15:00
- 참석자 : 조인혜, 노혜운, 전희원, 안태준(이상 순천향대학교), 박형근(청강문화산업대학교), 신범수(김포대학교)

○ 전문가 협의회

- 예술계열 학과의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진로지도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예술계 세부 분야별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예술 세부 분야별 학과의 성과 평가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예술계열 분야 문제점 논의를 위한 협의회
  - 일시 : 2014. 6. 20(금), 17:00
  - 참석자 : 배성근, 박재성, 이성식(이상 교육부), 오세곤(순천향대학교), 박진영(김포대학교), 이경학(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병희(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대현(호서대학교), 김시형(명지대학교), 서정국, 윤찬영(이상 계원예술대학교), 이승건(서울예술대학교)
  - 내용 : 현행 조사체계에서의 인정기준 현실화 및 향후 연구 진행방향 논의
- 전시분야 전문가 협의회
  - 일시 : 2014. 7 .29(월), 14:00
  - 참석자 : 김정영(청강문화산업대학교), 서정국(계원예술대학교), 최광춘(한국영상대학교)
  - 내용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논의 및 전시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시나리오, 출판, 저작권 전문가 협의회
  - 일시 : 2014. 7 .30(화), 14:00
  - 참석자 : 신강호(대진대학교)
  - 내용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논의 및 시나리오·출판·저작권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공연분야 전문가 협의회
  - 일시 : 2014. 7 .31(수), 14:00
  - 참석자 : 김대현(호서대학교), 안병순(순천향대학교), 최성신(청강문화

산업대학교), 유원용(경북대학교)

- 내용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논의 및 공연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설문조사

- 목적 : 예술계열 취업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 기간 : 2014. 7. 2 ~ 7. 7
- 대상 : 각 대학(전문대학)의 예술계열 학과장 및 교수 (응답 : 368명)
- 방법
  - 예술계열이 있는 각 대학(전문대학)에 공문으로 설문조사 협조 요청
  -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메일로 회신
  - 해당되는 항목에 한해서만 응답
- 문항 : 6개 분야별 40문항
- 응답 결과

<표 I-1> 지역별 응답자 현황(1)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응답수	72	30	10	7	14	8	0	13	59
비율%	19.6	8.2	2.7	1.9	3.8	2.2	0.0	3.5	16.0

<표 I-2> 지역별 응답자 현황(2)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무응답	총
응답수	14	12	17	19	7	24	9	1	52	368
비율%	3.8	3.3	4.6	5.2	1.9	6.5	2.4	0.3	14.1	100.0

<표 I-3> 학제별 응답자 현황(1)

학제별	일반대	전문대	무응답	총
응답수	169	122	77	368

〈표 I-4〉 학제별 응답자 현황(2)

특성별	종합대	예술계 단일대학	무응답	총
응답수	223	46	368	368

〈표 I-5〉 전공영역별 응답자 현황

전공별	디자인	응용예술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	무응답	총
응답수	117	31	18	59	36	53	54	368
비율(%)	31.8	8.4	4.9	16.0	9.8	14.4	14.7	100.0

## II. 취업통계조사 현황 및 유관사례 분석

### 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현행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조사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직장, 교내),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12.31일 조사), 1인(창)사업자(12.31일 조사), 프리랜서(12.31일 조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취업자로 인정을 하고 있음.
- 건강보험가입대상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표 II-1> 취업자 인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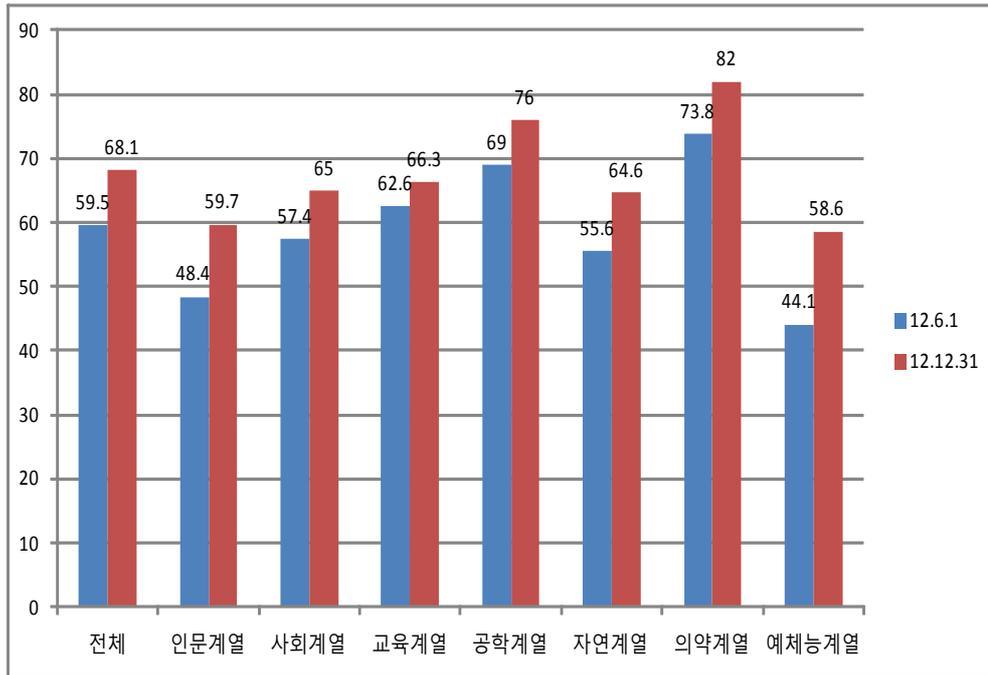
구분	세부항목	정의	조사내용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대학의 재정(교비, 산학협력단, 정부재정지원금 등을 포함한 대학의 모든 회계)으로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아 한시적으로 취업한 졸업자(교외취업자)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여도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교내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써 최저임금(2013년도 : 1,015,740원, 2014년 : 1,088,890원)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자 교내취업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사직했을 때 사직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단, 이직인 경우 제외) 사직 후 후임자가 없는 경우 검증 및 사후 점검에서 제외함.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근무형태, 주당근무시간

구분	세부항목	정의	조사내용
	해외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고용계약기간이 91일 이상인 자	국가명, 회사명, 비자유무, 비자유형,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근무형태, 주당근무시간
	영농업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의거한 농업인 확인서 및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개인작품 창작활동을 하는 자	실적 유형
	1인 창(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13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인 자	
	프리랜서	'13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액이 3,047,220원 이상인 자	

- 현행 조사체계에 따른 예체능 계열 취업률 통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2.31일 기준 취업률 통계는 6.1일 기준 통계에 비해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종사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업률이 높아짐
  - 최근 통계인 2012년 6.1일과 12.31일 기준 통계를 비교해 보면,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률은 8.6%p가 상승하였음.
  - 특히 6.1일과 12.31일 기준 통계의 편차가 가장 큰 계열은 예체능 계열로 14.5%p가 상승하였으며 편차가 가장 작은 계열은 교육계열로 3.7%p의 상승을 보임
  -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타 계열보다 프리랜서 및 개인창작활동종사자가 많은데 기인함
  - 예술계열의 프리랜서는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의 44.6%, 대학은 30.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은 뷰티아트, 영상예술 전공자, 대학은 체육

전공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예술계열의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의 89.7%, 대학의 경우 9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은 디자인 전공자, 대학은 순수 미술 전공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II -8] 6.1일과 12.31일기준일 취업통계조사 취업률 비교

<표 II -2> 12.31일 취업통계조사 졸업 후 상황

구분	졸업자	졸업상황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률(%)	취업자							
			합계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건강보험 가입 내 취업자	해외 취업자	영농종사자	개인작 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계 T	계 T	계 T	계 T	계 T	계 T	계 T	계 T	계 T	계 T	
전문대학										
총 계	189,700	68.1	119,167	109,075	1,541	348	352	610	1,988	5,253
<예체능계열>	31,982	56.4	16,031	12,300	334	21	18	547	469	2,342
[디자인]	12,243	57.1	6,422	5,384	142	3	7	233	114	539

구분	졸업자	졸업상황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 계 취업 률(%)	취업자							
			합계	건강 보험 가입 취 자	건강 보험 내 교 취 자	해 외 취 업 자	영 농 중 사 자	개 인 작 동 종 사 자	1인 창 (사) 업 자	프 리 랜 서
산업디자인	1,514	57.5	797	693	13	-	-	23	9	59
시각디자인	1,617	55.1	823	663	20	-	-	48	5	87
패션디자인	1,660	51.5	792	641	14	-	1	54	18	64
기타디자인	7,452	58.8	4,010	3,387	95	3	6	108	82	329
<b>[용용예술]</b>	<b>11,506</b>	<b>56.3</b>	<b>5,988</b>	<b>4,454</b>	<b>102</b>	<b>16</b>	<b>5</b>	<b>161</b>	<b>233</b>	<b>1,017</b>
공예	514	54.7	256	179	7	1	1	54	7	7
사진·만화	930	52.8	440	311	9	-	-	49	7	64
영상·예술	1,993	62.3	1,113	756	34	1	1	19	24	278
뷰티아트	8,069	55.3	4,179	3,208	52	14	3	39	195	668
<b>[무용·체육]</b>	<b>4,874</b>	<b>59.4</b>	<b>2,242</b>	<b>1,763</b>	<b>48</b>	<b>2</b>	<b>6</b>	<b>10</b>	<b>81</b>	<b>332</b>
무용	84	66.7	48	35	1	-	-	-	-	12
체육	4,790	59.3	2,194	1,728	47	2	6	10	81	320
<b>[미술·조형]</b>	<b>300</b>	<b>65.9</b>	<b>176</b>	<b>115</b>	<b>6</b>	<b>-</b>	<b>-</b>	<b>44</b>	<b>5</b>	<b>6</b>
미술	174	59.9	97	88	3	-	-	-	2	4
조형	126	75.2	79	27	3	-	-	44	3	2
<b>[연극·영화]</b>	<b>892</b>	<b>48.4</b>	<b>374</b>	<b>180</b>	<b>9</b>	<b>-</b>	<b>-</b>	<b>13</b>	<b>8</b>	<b>164</b>
연극·영화	892	48.4	374	180	9	-	-	13	8	164
<b>[음악]</b>	<b>2,167</b>	<b>47.6</b>	<b>829</b>	<b>404</b>	<b>27</b>	<b>-</b>	<b>-</b>	<b>86</b>	<b>28</b>	<b>284</b>
음악	2,041	46.4	751	332	26	-	-	86	28	279
음향	126	63.9	78	72	1	-	-	-	-	5
<b>대학</b>										
총 계	<b>298,868</b>	<b>66.0</b>	<b>171,121</b>	<b>151,506</b>	<b>5,893</b>	<b>610</b>	<b>83</b>	<b>1,429</b>	<b>1,610</b>	<b>9,990</b>
<예체능계열>	33,377	60.8	17,793	12,067	940	67	6	1,366	310	3,037
<b>[디자인]</b>	<b>9,727</b>	<b>65.1</b>	<b>5,754</b>	<b>4,574</b>	<b>210</b>	<b>41</b>	<b>-</b>	<b>404</b>	<b>75</b>	<b>450</b>
디자인일반	763	63.8	430	370	16	1	-	-	7	36
산업디자인	1,874	67.7	1,107	896	33	7	-	89	7	75
시각디자인	1,911	66.5	1,185	936	36	4	-	85	15	109
패션디자인	1,418	58.9	762	590	23	10	-	71	13	55
기타디자인	3,761	65.6	2,270	1,782	102	19	-	159	33	175
<b>[용용예술]</b>	<b>3,678</b>	<b>64.6</b>	<b>2,067</b>	<b>1,411</b>	<b>141</b>	<b>14</b>	<b>-</b>	<b>143</b>	<b>42</b>	<b>316</b>
공예	603	67.7	367	233	21	3	-	79	3	28

구분	졸업자	졸업상황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 계 취업 률(%)	취업자							
			합계	건강 보험 가입 취 자	건강 보험 내 외 취 자	해 외 취 업 자	영 농 중 사 자	개 인 작 업 종 사 자	1인 창 (사) 업 자	프 리 랜 서
사진·만화	848	61.6	483	312	52	-	-	36	6	77
영상·예술	2,227	64.9	1,217	866	68	11	-	28	33	211
<b>[무용·체육]</b>	8,772	67.0	5,220	3,854	197	10	5	74	96	984
무용	941	57.8	450	168	22	-	-	72	10	178
체육	7,831	68.1	4,770	3,686	175	10	5	2	86	806
<b>[미술·조형]</b>	3,661	54.3	1,645	913	112	2	1	305	29	283
순수미술	2,794	54.3	1,251	689	85	2	1	232	25	217
응용미술	237	59.2	125	82	8	-	-	27	1	7
조형	630	51.9	269	142	19	-	-	46	3	59
<b>[연극·영화]</b>	1,572	58.8	859	391	48	-	-	57	14	349
연극·영화	1,572	58.8	859	391	48	-	-	57	14	349
<b>[음악]</b>	5,967	45.6	2,248	924	232	-	-	383	54	655
음악학	1,920	45.7	744	333	71	-	-	113	24	203
국악	420	57.9	194	86	19	-	-	17	9	63
기악	1,735	39.5	572	210	48	-	-	135	8	171
성악	594	42.6	200	83	32	-	-	48	3	34
작곡	403	48.6	162	67	30	-	-	22	1	42
기타음악	895	52.7	376	145	32	-	-	48	9	142

- 대졸자 ‘졸업 후 상황’에 대한 해외 조사 사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대학 졸업자에 대한 졸업 후 상황을 조사하는 해외 조사 사례는 일본, 미국, 호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표 II-3>과 같음
  - 일본은 기초학력조사에 당해연도 3월 졸업예정자 및 10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학자, 취업자 등에 대한 전수 및 표본 조사를 실시함. 특히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4회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졸업자들의 진로상황의 변동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임

- 미국은 진학, 노동시장 진입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함. 미국은 추적 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1, 4, 10년 후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특징임
- 호주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전체 학사,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상황을 e-mail, 우편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시행함.

〈표 II-3〉 국내외 ‘졸업 후 상황’ 조사 사례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취업통계조사	기초학력조사 (School Basic Survey)	B&B (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	AGS (Australian Graduate Survey)
목적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인력수급 전망, 인적자원개발, 대학재정지원정책 등 기초정보 제공	취직내정 상황 등을 파악하여 취업문제에 적절하게 대처	진학, 노동시장 진입 등 교육-노동시장 이행 정보 제공	학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의 졸업 후 상황 정보 제공
조사대상	고등교육기관(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각종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자 전수 당해연도 2월 및 전년도 8월	당해연도 3월 졸업 예정자 (문부성, 노동성 공동)	학사학위 소지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학사학위, 석사학위) 전수: 당해연도 4월 및 전년도10월
조사내용	-졸업 후 상황 -진학 및 입대여부 -동일대상으로 6월과 12월 2회 조사 실시	대학원 등 진학자 취업자, 임상연수의 전수·외국학교 입학자 한시적 취업자 등	학사 학위 소지자들의 직업성과, 교육성과 정보 -졸업 후 진학상황 -학위취득소요기간 -직업탐색, 노동시장 이행 -직무교육, 노동성과, 직무만족도 등	학사학위, 석사학위 소지자들의 졸업 후 상황 -종사상지위(풀타임/파트) -직업분류/산업분류 -임금수준 -졸업 전 활동 -주 전공 등
표본설	해당없음	해당없음	NPSAS(National Postsecondary Student Aid Study):93	해당없음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취업통계조사	기초학력조사 (School Basic Survey)	B&B (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	AGS (Australian Graduate Survey)	
계		(112개교, 총6,250명)	모집단으로 확보 =>B&B:93: 12,480명, B&B:93/97: 11,190명, B&B:93/03 : 11,160명		
	전수조사: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능대학, 각종학교, 일반대학원	전수조사: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표본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학사 및 석사학위
자료수집	전수조사(개인별) -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전화 조사	전수조사(집계)	추적조사 4회 (전화 면접) - 1차년: 면접-1년후 (B&B:93) - 2차년: 4년 후 (B&B:93/97) - 3차년: 10년 후 (B&B:93/03)	전수조사(개인별) -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email, 우편, 전화, 현장조사(졸업 후 4개월 이후 시점 4월 30일)	
특징	매년 당해연도 2월 및 전년도 8월 졸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졸업 후 상황정보를 파악하는 횡단면 조사로 매년 조사 결과를 DB로 축적함	교육통계연보의 취업정보 집계자료 수준	동일 학교, 동일 인을 4회 연속조사 (10,12월, 익년 2,4월) => 취업상황추이 파악	수집 자료는 자료 처리(코딩, 데이터 처리, 가중치 부여 등)를 통해 비교 분석	조사응답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결과제출 가능함
결과활용	- 매년 취업통계연보 발간 - 주요결과 언론배포 -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제공 - 대학재정지원사업 주요 지표로 활용 - 대학별 정보공시 항목 연계	- 매년 일본통계연보 발간 - 일본 문부과학성 웹 사이트 제공	- 보도 자료 언론 배포	-매년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발간(졸업후 취업, 진학상황 등 수록 ※별첨2참조) - On-line 분석 시스템 제공 - CD_ROM 제공 - 세부 분석보고서 발간	-주요결과 언론배포 -인쇄물 발간 -GCA 웹사이트 제공 -세부 분석보고서 발간

## 2. 국내외 취업 관련 통계조사 현황

### 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고용률 지표를 발표하고 있음(<http://kostat.go.kr>)
  -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매월 15일 전국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매주 둘째 주 수요일에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직접적인 이득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수입을 높이는데 목적으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산업 및 직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분류에서는 예술계열 직업 구분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대분류의 중분류인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취업통계조사의 개인창작 활동종사자와 같이 예술관련 직업 종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구분은 적용하고 있지 않음

### 나.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통해 매해 전년도 2~3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음(<http://survey.keis.or.kr>)
  - 대학졸업자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및 정착과정을 추적조사하여 DB로 구축함으로써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 제공 및 인력수급불일치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패널조사는 2006년부터 실시하였는데 약 25,000명, 코호트조사는 약 18,00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졸업 후 약 20개월 후 1차 조사 실시, 1차 조사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회의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직접적인 이득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수입을 높이는 데 목적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산업 및 직업 분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 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청년패널조사」를 통해 15~29세 해당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장에서의 이행과정 및 노동시장 진입 후 이동경로를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http://survey.keis.or.kr>)
  - 이 조사는 장기 추적조사를 통한 청년층 노동력 수급 불균형과 고실업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통계 구축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추출된 표본가구 내 청년 개인 10,206명( '07년 기준 만 15~29세)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의 방문일에 해당하는 주를 기준으로 바로 전 주 1주일간의 상황을 조사하고 있음
  - 이 조사에서 사용하는 직업분류는 직능유형중심의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2)를 사용하는데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에서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을 구분하여 예술계열 직업군을 분류하고 있음

#### 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1998년부터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대한 추적조사로 진행되었음

-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 지역에서 추출한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해 있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http://www.kli.re.kr>)
- 이 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산업 및 직업 분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 마. 주요국가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고용관련 통계조사

(김을식 외, 2010 참조)

-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은 노동과 관련된 주요 통계들을 생산·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근로시간, 실업, 고용, 임금, 생산성, 근로통계 등을 관리하고 있음(<http://www.stats.bls.gov>)
  -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노동력 상황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 미군, 교도시설, 정신병원, 노인요양소 등에 거주하는 개인들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매월 19일이 포함된 주에 약 60,000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단,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16세 이상의 인구만을 경제활동인구로 인정하고 있어 계산 시에는 16세 이상의 인구만을 집계하고 있음
  - 조사대상 주간 중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장소유주, 15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와 질병, 기상, 휴가, 보육, 노동쟁의, 육아 휴직, 기타 가사로 인해 일주일간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 있거나 휴직하고 있는 자를 취업인구로 포함하고 있음
- 일본은 총무성 통계국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매월 노동력조사를 실시하고, 후생노동성에서는 매월 노동통계조사, 고용동향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음 (<http://www.stat.go.jp>)
  - 총무성 통계국의 매월 노동력조사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날에 실시하며(12월은 26일에 실시) 조사기간은 1주간 진행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의 매월 노동통계조사는 5인 이상의 상용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단위 조사와 지자체 단위 조사, 1~4인의 상용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들을 조사하는 특별조사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 영국의 노동력조사는 영국에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장 규모가 큰 정기적 조사로써, 국제노동기구(ILO), 유럽 연합 및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과 정의를 따르고 있음(<http://www.statdticd.gov.uk>)
  - 3달마다 전국의 16세 이상 인구 120,000명 가량을 대표하는 53,000여개의 가구 조사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각각의 가구는 3개월 단위로 5번의 조사를 받게 됨
  - 생산가능인구의 고용, 경제활동성, 비경제활동성 및 전체 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을 보여주며, 고용수준을 집계할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 3. 국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

- 대학 졸업자의 취업, 진학 등 진로에 대한 현황은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추적조사를 통해 대학 졸업자의 직업 이동에 대한 장기적인 변동 상황을 조사하는 반면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 졸업자의 졸업시점에서의 취업 여부를 조사함.
-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졸업자 취업률조사 외에도 전체적인 취업 및 고용현황의 파악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청년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활용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중분류 단계에서 예술관련 직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단계에서 예술관련 직업을 정의하고 있음.

- 대졸자 및 국가수준의 취업 조사의 방법은 본원의 취업통계조사와 같이 공공DB 가입자를 통한 정확한 조사보다는 대부분 전화나 우편 또는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정확성 및 검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취업 현황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구직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조사가 많다는 점이 특징임.

### Ⅲ. 예술계열 직업분류와 예술계 노동시장의 실태

#### 1. 국내외 예술인의 정의 및 인정범위

#####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정의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예술인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임(「예술인복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 그 밖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자

##### <표 Ⅲ-1> 예술인복지법 관련 법령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도에 수행한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연구’에서는 예술인의 범위에 대한 기존 분류의 한계점을 진단하면서 예술인을 활동 분야와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였음(박영정, 2012)
  - 예술 활동 분야에 따른 예술인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과 결합되는 영역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의 12개 분야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의 ‘응용미술’에는 공예분야와 디자인분야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예와 디자인이 예술 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연예’라는 장르명에는 ‘영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별개의 장르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영화를 제외하는 대중예술분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개념적 불확실성은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고, 「예술인복지법」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공예 및 디자인 분야를 ‘응용미술’의 한 장르로 간주하여 ‘미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으로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이라 함은 그 활동의 특성에 따른 분류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과 실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의미의 ‘예술인’에 해당하며, 작가나 화가, 작곡가 등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예술가’와 이미 창작된 작품을 연기나 연주 등을 통해 재현하는 ‘실연예술가’로 구분됨
  - 예술의 생산과 유통에는 ‘예술인’ 외에도 기술 스태프, 기획, 경영 스태프 등 다양한 인력군이 존재하며,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창작 예술가와 실연예술가만이 아니라 기술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

- 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예술 교육 인력’ 에 대해서는 「예술인복지법」 상 별도 규정이 없음
  - 이 경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참조하면 현실에 근접한 예술계 졸업자 활동정보 파악이 가능함
  - 예능학과 교수, 예능과목 교사, 예능학원 강사 등 직무상 예술교육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술 교육 활동이 예술 활동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광의의 예술 활동에 포함할 수 있음
  - 단,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이 그룹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창작예술가나 실연예술가로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이중적으로 예술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정도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표 III-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관련 법령**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1.6.7., 2012.2.17., 2014.1.21.&gt;</p> <p>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p> <p>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p> <p>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p> <p>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p> <p>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p> <p>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p> <p>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p>
--

<p>육을 실시하는 시설</p> <p>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p> <p>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p> <p><b>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

- 고용의 측면에서 예술분야 직업을 분류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서는 예능강사의 정의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표 III-3〉 한국고용정보원의 예능강사 직업예시

직업예시	음악학원, 웅변학원, 바둑학원, 미술학원, 모델학원, 꽃꽂이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종이접기학원
분류시 유의사항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교육원 등에 출강하여 예능분야의 특기적성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포함
주요업무	음악, 미술, 서예, 영화배우, 성우, 무용 등의 예능분야를 전문으로 지도한다 기본적인 이론을 가르치고 기능을 시범한다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을 지도하고 실습작품으로 실기기능을 평가한다
자격요건	대졸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공자를 선호한다 학력보다는 창의적인 재능과 실무경험, 경력이 필요하다
한국표준 직업분류 연계코드	15694 예능학원강사, 2521 교육기관 교육 준전문가 2522 교육기관 이외 교육 준전문가
취업알선 직업분류 연계코드	3123 예체능(학원)강사, 3129 기타(학원)강사

## 나.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인정 기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정의는 예술인 인정예술 분야 및 증빙자료 기준(<http://www.kawf.kr> - 예술활동증명)에 의해 구체화됨
  - 이때 인정 기준은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예술활동실적)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저작물이 있는 실적임

〈표 III-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인정기준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 작품 또는 문학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또는 문학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 (응용미술 포함),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p>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p> <p>다.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p> <p>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p> <p>마.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p>
만화	<p>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자(단, 해당 저작물로 인한 수익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자(단, 해당 저작물로 인한 수익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자</p> <p>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공인된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p> <p>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단, 해당 저작물로 인한 수익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제작 및 전시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술지원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p>

○ 예술활동 중심의 예술인 증빙자료 기준은 다음과 같음(<http://www.kawf.kr>)

〈표 III-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증빙자료 기준

증빙자료 필수 명시 사항	
1. 예술활동명 2. 발표일시 3. 신청자명과 역할	
공개 발표 형태	증빙자료
작품집 /비평집	1.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2. 발행정보면
	3.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전시/공연	1.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등)
	2. 참여자 목록
음반/앨범	1. 앨범 커버
	2. 앨범 발매정보면
	3. 앨범 크레딧
영화/방송 /광고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결과 스크린 캡처 (*URL 주소 포함) *주최/제작기관확인서 증빙으로 대처 가능 *온라인 시나리오마켓 등록실적 미해당
모든 활동	1. 계약서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하였으나 신청자명과 역할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계약서로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음
	2. 예술활동 결과물 (관련 인쇄물, 음반 등)

- 예술인을 증명하는 또 다른 기준은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이 될 수 있음
- 예술인의 개인 수입은 ‘예술 활동 수입(작품 창작이나 실연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원고료나 인세, 작품 판매수입, 출연료 등이 여기에 해당)’ 과 예술 관련 수입(예술과 관련이 있는 제반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말하며, 강의료, 자문사례비 등이 이에 속함)’, 그리고 ‘비예술 수입(예술과 무관한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수입 일체를 말함)’ 의 셋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표 III-6〉 취업통계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입기준 항목 비교

구분	취업통계팀(프리랜서 항목)	예술인복지재단	
기준	‘13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액이 3,047,220원 이상인 자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	
증빙	없음(국세청DB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계약기간 및 계약금 명시)</li> <li>· 통장사본(계좌소유주정보 포함)</li> <li>· 인터넷,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스크린캡처(계좌소유주 정보 포함)</li> <li>· 원천징수영수증</li> <li>· 입금확인증</li> </ul>	중 택1
		관련인쇄물, 음반 등 신청자명과 역할을 확인 가능한 자료	

〈표 III-7〉 소득세법 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국내 유사기관의 예술인 인정범위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산업을 12개 대분류, 51개의 중분류, 131개의 소분류로 구성하고 있음(<http://www.kocca.kr>)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는 12개 영역인, 1.출판산업, 2.만화산업, 3.음악산업, 4.게임산업, 5.영화산업, 6.애니메이션산업, 7.방송산업, 8.광고산업, 9.캐릭터산업, 10.지식정보산업, 11.콘텐츠솔루션산업, 12.공연산업으로 구성
  - 단, 2013 콘텐츠산업통계에서는 아직까지 공연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콘텐츠산업 전체규모에 공연산업을 제외한 11개 산업 규모만을 포함
  - 2013 콘텐츠산업통계 분류체계는 11개 업종을 대분류로 하고, 11개 대분류는 43개의 중분류, 111개의 소분류로 구성

〈표 III-8〉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분류 항목

대분류	중분류
출판산업	출판업, 인쇄업, 출판도소매업, 온라인 출판유통업, 출판임대업
만화산업	만화출판업, 온라인 만화제작유통업, 만화임대업, 만화도소매업
음악산업	음악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도소매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 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게임산업	게임 제작 및 배급업, 게임 유통업, 게임 도소매 및 임대업
영화산업	영화제작 지원 및 유통업, DVD/VHS 제작 및 유통업
애니메이션 산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방송산업	지상파 방송, 유선 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용사업, 전광판방송, 방송영상물제작업, 인터넷 영상물 제공업, 방송영상물배급 및 중개업, 방송관련 단체
광고산업	광고(종합)대행업, 광고제작업, 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업, 기타업
캐릭터산업	캐릭터산업, 캐릭터 상품 유통업, 캐릭터 놀이시설 운영업, 캐릭터 상품 온라인 유통업
지식정보산업	e-learning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
콘텐츠 솔루션 산업	콘텐츠 솔루션업, 컴퓨터그래픽스 제작업
공연산업(음악공연 제외)	공연업, 공연관련 서비스업

○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표준직업분류 2009를 활용한 예술인 직업구분

<표 III-9> 한국표준직업분류(2009)에서의 예술인 직업구분

구분	직업 그룹	표준직업분류(세세분류)
창작 예술가	작가	방송작가(28111), 작가 및 평론가(28112), 광고문 작성가(28113), 스크립터(28114), 그 외 작가 및 관련 전문가(28119), 번역가(28120)
	화가 및 조각가	화가(28411), 조각가(28412), 서예가(28413), 만화가(28431), 만화영화작가(28432)
	사진가	사진작가(28421), 사진가(28423)
	건축가	건축가(23111)
	디자이너	자동차디자이너(28511), 가구디자이너(28512), 그 외 제품 디자이너(28522), 작물 디자이너(28521), 의상 디자이너(28522), 액세서리 디자이너(28522),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28524), 인테리어디자이너(28531), 디스플레이어(28532),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28533), 광고디자이너(28541), 포장디자이너(28542), 북 디자이너(28543), 삽화가(28544), 색채 전문가(28545), 활자디자이너(28546), 그 외 시각 디자이너(28549), 웹디자이너(28551), 멀티미디어 디자이너(28522), 게임그래픽 디자이너(28553)
	공예가	도자기 공예원(79111), 조화 공예원(79112), 목 공예원(79113), 석 공예원(79114), 양초 공예원(79115), 종이 공예원(79116), 그 외 공예원(79119), 귀금속 세공원(79121), 보석 세공원(79122), 그 외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79129)
	작곡가	작곡가 및 편곡가(28452)
	안무가	무용가(28471)
	실연 예술가	무용수
연주가 및 성악가		연주가(28453), 가수(28461), 성악가(28462)
감독 및 지휘자		감독 및 연출가(28311), 지휘자(28451), 기술감독(28314), 그 외 감독 및 연출가(28319), 작곡가 및 편곡가(28452)

구분	직업 그룹	표준직업분류(세세분류)
	배우	배우(28321), 개그맨 및 코미디언(28322), 성우(28324)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	국악인(28441), 국악 연주자(28442), 국악 작곡 및 편곡가(28443), 전통예능인(28444)
	기타 실연예술가	마술사(28991), 그 외 문화예술 관련 종사원(28999), 모델(28323), 그 외 배우 및 모델(28329), 보조 연기자(28399), 무대영상 관리원(28391), 소품 관리원(28392), 방송연화 연출 보조원(28393), 그 외 연극 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28399)
기술 지원 등 예술 지원 인력	기획 스태프	이벤트전문가(27351), 행사 전시 기획자(27352), 감정사(27412), 예술품 중개인 및 경매사(27442), 큐레이터(28211), 연예인 매니저(28911), 문화재 보존원(28212), 국내 및 국제 회의 기획자(27353), 감정평가사(27411), 농수산물 중개인 및 경매사(27411), 그 외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27449), 스포츠 매니저(28912)
	기술 스태프	기술감독(28312), 촬영기사(28340), 음향 및 녹음기사(28350), 영상 녹화 및 편집 기사(28360), 조명기사(28371), 영상기사(28372)
	그 외의 예술 스태프	무대영상 관리원(28391), 소품관리원(28392), 방송·영화연출 보조원(28393), 특수분장사(42242), 분장사(42243), 입장권 판매원(52123), 메이크업 아티스트(42241)

○ 한국표준산업분류(6차 개정)를 활용한 예술인 직업구분

〈표 III-10〉 한국표준산업분류(6차 개정)에서의 예술인 산업구분

구분	산업 그룹	산업분류
창작예술분야	작가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73902)
	디자인	전문디자인업(732, 7320),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사진	사진 촬영 및 처리업(733, 7330), 사진 처리업(73303)
실연예술분야	무용 및 연주	공연단체(9012), 연극단체(90121), 무용 및 음악단체(90122)
	기타 실연예술	기타공연단체(90123), 자영예술가(9013), 공연예술가(90131), 비공연예술가(90132)
기술지원 등 예술지원분야	기획	공연 기획업(90191)
	기술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9019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광 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591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5914),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592, 5920)
	그 외의 지원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공연시설 운영업(9011, 90110),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9)

### 라. 국외 예술인 정의 및 인정범위

- 미국은 예술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예술인의 정의 및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사적 지원의 형태인 개별 노동 조합 등에서의 가입 기준 및 조건으로 예술인의 자격을 유추할 수 있음 (박조원 외4, 2013)
  - 출판, 영화 및 비디오, 음반, 방송, 건축, 응용 디자인, 광고, 공연 예술, 전시 예술, 기타(독립 예술인, 작가, 공연가)

〈표 III-11〉 미국의 예술인 인정범위

예술직	예술관련직
예술연출가, 공예가 화가, 조각가, 일러스트레이터를 포함한시각예술가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및 애니메이터 광고 및 산업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플로랄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머천다이저 무대디자이너, 기타 디자이너 배우 프로듀서 및 디렉터 무용가, 안무가 음악 디렉터 및 작곡가 음악가 및 가수 기타 모든 엔터테이너, 퍼포머, 스포츠관련직 홍보전문가, 에디터 테크니컬 라이터 작가, 사진가	기타 예술관련직 라디오 및 텔레비전 아나운서 공공장소 및 기타 아나운서 방송 애널리스트 리포터, 특파원 통역가 및 번역가 기타 모든 미디어 관련직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자 방송 기술자 음향 기술자 카메라 기술자 영화 및 비디오 에디터 기타 모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자

- 프랑스는 법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는 예술인으로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시청각 예술, 영화, 그래픽, 조형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8개 장르의 예술작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박조원 외, 2013)
- 영국의 고용현황 통계조사는 Towse(1996)가 예술가의 범주를 8가지로 정리한 것 가운데 ‘예술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로 인하여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예술가 범위에 적용하고 있음(박조원 외, 2013)

- 단, 이런 기준을 적용하여 예술가를 규정할 경우 조사기간에 예술가일 지라도 돈을 받고 예술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들에 대한 수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표 III-12〉 영국의 예술인 인정범위

구분	SOC
	예술직(15개 직종)
영국	대중예술 및 스포츠 매니저
	건축가
	사서
	아키비스트 및 큐레이터
	작가 및 저널리스트
	예술가, 상업예술가, 그래픽디자이너
	산업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배우, 연예인, 공연 매니저, 연출가, 감독
	음악가
	사진작가, 카메라 및 음향, 비디오감독
	정보담당자
	금세공 및 은세공, 원석가공자
	유리공예가 및 도자기공예자
	악기제작자 및 조율사

○ 캐나다 통계청은 예술가의 직업내용과 직업명에 따라 분류한 표준 직업 항목에서 예술적인 콘텐츠를 담고 있는 9개 직업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박조원 외4, 2013)

- 1. 배우, 2. 도자예술가, 3. 지휘, 작곡, 기획조정자, 4. 무용가, 5. 음악가, 가수, 6. 행위예술가, 7. 화가, 조각가, 시각 예술가, 8. 감독, 안무가, 관련직, 9. 작가로 구분하고 있음

〈표 III-13〉 캐나다의 예술인 인정범위

예술직	예술관련직
건축가 조경건축가 산업디자이너 작가 저널리스트 연출가 및 안무가, 관련직 지휘자, 작곡가, 편곡자 음악가 및 가수 무용가 배우 화가, 조각가, 기타 시각예술가 사진가 공연가 그래픽디자이너 및 일러스트레이터 실내디자이너 무대, 패션, 전시 및 기타 디자이너 장인 및 공예가 사서 큐레이터 아키비스트	사서, 아키비스트,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자 출판, 영화, 방송 및 공연 관리자 슈퍼바이저, 도서관, 통신, 정보담당 도서관 서기, 통신 및 출판 담당 조경 및 원예기술자 건축기술자, 설계 기술자 홍보 전문가, 번역가 도서관 및 아카이브 관련 기술자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기술자 영화 및 카메라 기술자 그래픽아트 기술자 방송 기술자 오디오 및 카메라 기술자 기타 영화, 방송관련직 아나운서 및 기타방송직 직물, 가죽, 모피 등 주형 도안가 식자공 및 관련전문가 인쇄관련전문가, 인쇄기술자 인쇄기계조작자 카메라, 인쇄 및 관련직 바인딩 및 마무리 기계 조작자 사진 및 영화가공자

- 독일은 ‘예술가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를 문화예술활동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예술가 및 언론출판인’으로 정의하고 있음(박조원 외4, 2013)
  - 예술가 : 음악, 공연예술 및 미술을 창작 및 영위하거나 또는 이를 가르치는 자
  - 언론출판 : 작가, 언론인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출판업에 종사하거나 언론출판학을 가르치는 자

- 독일은 통상적인 예술가 외에도 언론출판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폭이 넓음

○ 호주는 각각의 서로 다른 정의와 예술이라는 직업의 범주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주요 직업이 문화관련 직종에 속해 있는 인구센서스조사를 토대로 3가지 영역(핵심 예술직업(화가, 작가, 가수), 그 밖의 문화관련 직업(사서, 역사가, 음향기술사), 예술 관련 직업(음악교사, 영화편집가, 미디어 프로듀서)으로 정리(ASCO)하고 있음(박조원 외, 2013)

- 그 밖의 문화관련 직업(사서, 역사가, 음향기술사)은 활동 중인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예술인 통계를 활용하여 작가, 시각 예술가, 도예가, 배우, 무용가, 작곡가, 지역문화발전가로 구분하였으며, 예술 활동 급여여부를 기준으로 ①영화/비디오산업, ②공연예술(축제) 기획, ③문화유산 기구, 국공립 미술관, 식물원, 수족관, 도서관, 정부 기구 종사자)으로 구분하였음

〈표 III-14〉 호주의 예술인 인정범위

예술직	예술관련직
배우, 무용가, 관련 전문직	건축가
예술감독, 예술가, 작가	예술감독 및 관련 전문직
디자이너 및 일러스트레이터	예술관련 교육자
영화, TV, 라디오, 무대 감독	도서편집자, 카피라이터
음악가 및 관련 전문직	영화, TV, 라디오, 무대감독 및 관련
사진가	전문직, 저널리스트 및 전문저술가
시각예술가 및 공예가	미디어 제작자

○ 일본은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2장 16조(예술가 양성 및 확보)에 따르면 문화 예술에 대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 전통 예술의 전승자,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문화 예술 활동의 기획을 실시하는 사람, 문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 기타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자’ 를 예술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3장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르면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기타예술, 미디어예술, 전통예술, 생활문화예술이 예술의 범주에 포함(박조원 외4, 2013)

## 2. 국내외 예술인 실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연예술 계약 사례연구’ (백현주 외, 2013)

- 이 연구는 예술 장르별 상세한 직업군을 분류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연예술분야에서 계약서의 작성이 이뤄지는 상황과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무엇이며, 그 차이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현장의 실제 상황을 분석함
  - 연구대상은 무대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예술 분야로 한정하였으며, 장르는 연극, 뮤지컬, 전통, 무용, 대중음악, 클래식 6개 분야로 한정하였음
  - 헤드(head staff)에게 임의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어시(assistant staff, junior staff)들과 단역 및 엑스트라 배우들은 일정 부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 예술가는 보험, 대출 등의 보편화된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뚜렷한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5년을 활동 하든 10년을 활동하든 활동의 경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거의 이뤄져 있지 않은 실정임
  
- 계약서 미작성 사유에 대해서는,
  - 계약의 의미와 계약서의 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 낮은 수익구조 및 소규모 자본력에 의해 계약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함
  - 예술적 기회 및 경제적 기회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학 교수님’의 권력으로 인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 문화 정착이 어려움

- 문제점으로는 공연시장 진입 후(대학 졸업 후)의 초기 경력을 확보하려는 졸업생의 경우, 적절한 무대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발적으로 프로덕션을 구성하고 작품을 제작하는 등 무대 기회를 스스로 확보하기도 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가의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김효정 외, 2013)

- 국내 예술시장의 일자리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이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의 노동시장은 창작을 통한 새로운 활동 영역의 경제활동과 직업의 생성과 소멸로 이루어져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개념과는 다름
  - 예술노동시장의 특징은 크게 프로젝트단위의 고용(단기고용), 저임금 고전문성(경력에 따른 임금책정이 아닌 스타와 비스타로서의 임금 책정 및 격차), 높은 업무 만족도(저임금, 불안한 고용안정성에도 높은 업무 만족감과 낮은 이직률) 등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함
  - 프로젝트단위 고용은 일반적으로 조직 몰입도 저하, 팀워크나 집단 생산성 저하, 업무단절 및 비효율, 교육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예술분야에서는 인력의 전문성이 작품의 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품 성패의 핵심적인 요인이므로 장르에 따라 창작물의 질 향상 요인이 되는 장점이 되기도 함
  - 문화예술단체 근로자들은 자아성취, 보람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 예술노동시장 인력들은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경제적 보상에 덜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예술가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다. 예술시장 및 인력관련 기존 조사 현황

- 문화예술의 장르별 시장실태, 문화예술 기반 시설 및 향수 실태,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기본 통계가 각 기관별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성별 문화인력 실태조사와 DB구축방안 연구를 거쳐 2009~2010년 성별 문화인력 통계DB가 조사 구축되었음.

〈표 Ⅲ-15〉 국내 유사기관의 예술시장 및 인력실태조사 비교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산업통계	콘텐츠 산업통계	공연예술 실태조사	미술시장 실태조사
조사 시기	98년~현재	88년~05년 06년~현재	03년~08년	12년~현재	07년~현재	08년~10년
조사 주기	3년	(3년)2년	1년	1년	공연시설:1년 공연행정기관, 공연단체: 격년	-
조사 실시 기간	10~12월	10~11월	3월	5월	7월~9월	6월~8월
조사 시점	7월 기준 (지난 1년간)	8월 기준 (지난 1년간)	3월 기준 (지난 1년간)	5월 기준 (지난 1년간)	7월 기준 (지난 1년간)	6월 기준 (지난 1년간)
조사 대상	10개 분야 예술인(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	아파트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중인 만 15세 이상 일반국민 (5,000명)	문화분류 체계 10개 영역	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	전년도 조사모집단을 기반으로 공연행정기관, 공연시설, 공연단체	주요유통영역(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공공영역(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미술은행, 미술관)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구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산업통계	콘텐츠 산업통계	공연예술 실태조사	미술시장 실태조사
조사 내용	-창작활동 여건 -단체참여 및 봉사활동 -디지털환경과 예술활동 -교육과 직업 -의식 및 정책 평가	-창작활동 여건 -단체참여 및 봉사활동 -디지털환경과 예술활동 -교육과 직업 -의식 및 정책 평가	-사업체 기초 정보 -사업체 현황	-콘텐츠산업 전체결과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산 업별 결과	-공공지원 현황 -공연시설 운영현황 -공연단체 운영현황	-일반현황 -사업운영현황 -작품판매 및 구입 현황 -재정 현황
방법	표본조사 (2,000명) 우편, 이메일, 팩스	표본조사 (5,000명) 1:1방문면접 조사	실태조사+ 타조사인용 자료	표본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대인면접 조사	현장조사 대인면접 조사
	문화체육관광 공부 문화통 계포털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을 통해 제공	문화체육관광 공부 문화통 계포털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을 통해 제공	-	문화체육관광 광부 문화통 계포털, 통계 청 국가통계 포털, 한국콘 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본 보고서는 예술경영지 원센터를 통해 확인	본 보고서는 예술경영지 원센터를 통해 확인
공개 시기	12월	12월	3월	4월	12월	12월
공개 주기	3년	격년	1년	1년	1년	1년

-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 각 영역별 지원기관에서도 예술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예술인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예술인적자원DB구축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예술지원사업이 각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지역문화재단별로 지역 내 예술자원 및 예술인적자원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 예술자원과 예술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들이 지역별로는 축적되고는 있지만 전체적 관점에서 예술인적자원에 대한 조사항목 DB구축항목이 일관되게 구축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 예술인적자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로 연계되지는 않은 상황임.

〈표 III-16〉 지자체의 예술인적자원DB구축 사례

기관명	DB명	주요내용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DB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문화NGO, 문화공간정보, 문화예술행사
대전문화아카이브	문화예술DB	문화예술인, 예술강사,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사업체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DB	예술인, 예술단체
익산문화재단	문화예술DB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DB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문화자원, 출향문화 예술인, 문화예술작품, 문화예술프로그램은행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DB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작품
진주문화재단	문화예술DB	문화행사, 문화예술, 문화DB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DB	문화기반시설, 예술단체

- 예술인적자원에서는 DB직종 분류체계(2009) 문화예술 관련 활동분야 및 세부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

<표 III-17> 예술인적자원 DB직종 분류체계(2009년 기준)

장르	업무영역	세부영역
문학	자유창작	시인, 소설가, 수필가, 희곡/시나리오작가, 동화작가, 평론가
	교육/연구	연구자, 대학교수, 시간강사, 중/고교 교수, 초등교사
미술	자유창작/실연	서양화가, 동양화가, 판화가, 서예가, 조각가, 공예가, 설치미술가, 미디어아트 작가, 디자이너
	교육/연구	연구자, 대학교수 시간강사, 중/고교 교사, 초등교사, 과외 및 개인레슨/학원출강
사진	자유창작	창작사진 포토그래퍼, 보도사진 포토그래퍼, 상업사진 포토그래퍼
	교육/연구	사진 평론가 및 연구자, 대학교수, 시간강사, 학원출강
건축	기획	건축 설계자, 구조 설계자, 도시환경 설계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교육/연구	건축 이론가/연구자, 대학교수, 시간강사, 학원출강
음악	자유창작/실연	성악가, 건반악기 연주자, 현악기 연주자, 관악기 연주자, 타악기 연주자, 오페라퍼포머, 작곡가, 작사자, 지휘자
	교육/연구	음악 이론가/연구자, 대학교수, 시간강사, 중.고교 교사, 초등교사, 과외 및 개인레슨/학원출강
국악	자유창작/실연	기악 연주자, 성악가, 풍물패 연주자, 민속극 퍼포머
	교육/연구	국악 이론가/연구자, 대학교수, 시간강사, 중·고교 교사, 초등교사, 과외 및 개인레슨/학원출강
무용	자유창작/실연	한국 무용가, 발레리나, 현대 무용가

	교육/연구	무용 이론가/연구자, 대학교수, 시간강사, 중·고교 교사, 초등교사, 과외 및 개인레슨/학원출강
연극	자유창작/실연	연출자, 연기자, 극작가
	교육/연구	연극 이론가/연구자, 대학교수, 시간강사, 학원출강
예술행정/예술경영		공연기획, 문화예술행정, 행사기획, 전시기획, 문화예술경영 등
기타		자유창작/실연, 교육/연구
방송	기획/총괄	사장, 부사장, 정책기획팀, 인사기획팀, 편성본부, 경영본부
	자유창작/실연	보도본부, TV제작본부, 라디오 제작본부
	교육/연구	방송문화 연구, 방송기술 연구, 대학교수, 시간강사, 학원출강
	홍보/마케팅	홍보팀, 광고팀
	스태프	기술 본부, 디지털 미디어 센터, 시청자 센터
광고	기획/총괄	광고 기획팀, 경영지원팀
	자유창작/실연	촬영팀, 작가팀, 연출팀, 편집팀
	교육/연구	연구자, 대학교수, 시간강사, 학원출강
	스태프	조명팀, CG팀, 음향팀
캐릭터	기획/총괄	캐릭터 산업 기획자, 캐릭터 산업 저작권 관리
	자유창작	캐릭터 제작자
	홍보/마케팅	캐릭터 산업 마케터
공연	기획/총괄	극장장, 기획실, 공연기획팀, 경영관리팀, 예술감독, 예술단 관리, 하우스 매니저, 대관업무, 공익사업관리, 홈페이지 관리
	교육/연구	공연 평론가/연구자, 대학교수, 시간강사
	홍보/마케팅/디자인	국내 마케팅, 해외 마케팅, 극장 홍보물
	스태프	무대기계관리, 무대음향관리, 무대전환관리, 무대조명관리, 매표, 예매, 대관서비스
복합직군		자유창작/실연, 교육/연구, 홍보·마케팅
기타		자유창작/실연, 교육/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장르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8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로 세부장르가 85개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음

〈표 III-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분야 장르

지원분야	세부장르
문학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동시), 아동문학(동화), (문)평론, (문)기타(기획, 종합 등), 장편소설, 중편소설,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평론, 종합, 기타, 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시각예술	한국화, 서예, 양화, 판화, 조각, 설치/영상매체, 사진, 공예, 건축평론, (시)기타(기획, 종합 등), 전시, 창작체험
연극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연)평론, (연)기타(기획, 종합 등), 연극공연, 연기
무용	한국무용(창작_전통), 현대무용, 발레, (무)평론, (무)기타
음악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음)평론, (음)기타, 동요, 합창, 중창, 작곡, 기악-건반, 기악-현악, 기악-관악, 기악-타악
전통예술	국악기악(정악, 민속악, 창작음악), 국악성악(판소리,창극,전통음악창작극,국극,민요,가곡,가사,시조), 풍물, 사물놀이, 전통민속, 전통공예, (전)평론, (전)기타(기획, 종합 등), 국악공연, 작곡
다원예술	다원예술, 종합예술
예술일반	예술일반, 전문축제, 시민축제, 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기타, 발간, 연예

## 라. 국내외 예술지수 조사 사례

- 국내 문화예술관련 지수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관련 지수는 통계청에서 작성 공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한 부분으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3차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결과, 2012, 통계청)
  - 문화지표체계는 1987년 문화·여가 지표의 31개 지표로 신설된 이래로 1995년 1차 개편 시 34개로 늘었으며 2004년 2차 개편 시 44개로 늘었음
  - 현재 사용 중인 44개 문화·여가 지표 중 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문화예술시설수, 예술행사수, 문화예술행사 종류별 관람률, 문화예술교육 종류별 참여율 등 7개 지표에 불과함

〈표 III-19〉 국내 문화예술관련 지수 연구 사례(김소영 외5, 2013)

연구제목	연구기관	대분류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 (1986)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유산, 문학, 조형예술, 디자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대중매체, 사회문화적 활동, 여가활동, 국제문화교류
문화지표체계 개선(199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유산, 예술, 대중매체, 사회문화적 활동, 여가활동, 국제문화교류
문화지표 체계개선: 2005 문화지표(2005)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문화유산,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대중문화, 문화공간

○ 국외 문화예술관련 지수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III-20〉 국외 문화예술관련 지수 연구 사례

구분	국가명	특징
국제기구	IFA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지표와 예술지표를 구분하고 문화지표 간 위계체제를 제시함</li> <li>- 본 연구는 지표 개발 연구이기 보다는 기존 연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표연구에 접근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음</li> </ul>
	C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적 향상과 “장소(공간)”, 개인들의 웰빙과 개인 개발,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구축, 경제적 발전, 공동체의 문화적 활기, 문화 영역의 복지와 지속가능성 등의 분류체계를 가짐</li> <li>- 기존의 문화지표 연구 사례 (호주, 홍콩, 뉴질랜드, 영국, 미국, OECD)를 통합 분석하여 어떤 주제의 지표들이 주로 기존 연구에서 채택되었는지를 취합하여 분석함</li> </ul>
국가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ESCO(1986) 문화지표체계의 중심 개념에서 환경, 스포츠, 레크레이션, 기술은 문화개념에서 배제함</li> <li>- 문화유산, 출판물·문학, 음악, 공연예술, 회화·조형예술, 영화·사진, 라디오·텔레비전, 사회문화활동 등을 문화지표로 활용함</li> </ul>
	프랑스	지표를 예술영역과 기능영역으로 나눔

## 마. 국외 예술시장 및 인력관련 조사 사례 연구(추미경 외, 2012)

- 캐나다 문화인적자원위원회(CHRC)는 회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적 직종에 종사하는 문화인력들이 개인과 단체, 단체+ 자격으로 유료로 등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함.(<http://www.culturalhrc.ca>)
  - CHRC 회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문화인력으로서의 경력개발, 교육훈련, 직업연계와 관련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음
  
- 영국 예술위원회 정규지원예술단체 통계(Annual Submission by regularly funded organization(ACE))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예술단체에 대한 연간 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영국 통계청에 공식 통계자료로 축적되는 구조임(<http://www.artscouncil.org.uk>)
  
- 우리나라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기관/단체 DB는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기본정보를 국문, 영문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 자료는 매년 진행되는 PAMS(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운영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도 예술경영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관련 DB로 활용하고 있음.(<http://www.gokams.or.kr>)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통합운영시스템은 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예술강사와 전문가 대상의 인적자원 DB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구조임(<http://ums.arte.or.kr>)

<표 III-21> 국외 예술시장 망 인력DB구축 조사 사례

구분	내용			
	캐나다	영국	한국	
기관명	문화인적자원위원회 (CHRC)	예술위원회(ACE)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목적	인적자원계획·관리·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조직화, 향상시키는 정책에 창조적 직종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정부와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지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목적	문화예술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및 국내 기관의 해외홍보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지식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교육주체들 간의 소통 구조를 형성하고 온라인 교육콘텐츠 서비스 제공
등록대상	창의적 직종에서 일하는 예술가, 기술자, 관리자, 생산자 대상	ACE에게 지원받는 모든 단체	문화예술기관, 단체	예술강사, 전문가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관계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관계자
운영체제	유료 회원제 회원자격은 1년 단위로 갱신	조사대상 단체가 시스템에 직접 입력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용자가 시스템에 직접 입력
제공서비스	등급별 유료 서비스 일반·인쇄물, 신간 구입시 할인, 구직등록 할인, 투표권한, 전자문서 제공 혜택	영국통계청 공식 통계보고서로 제출	단체, 기관정보 등록 및 수정 서비스 지역별·소속형태별·법적형태별 단체 현황 검색 서비스	POOL등록, 검색 서비스 연수관리서비스 교육활동관리 서비스

### 3. 예술인 정의 및 인력구조의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예술인의 정의 중 법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정의된 정의가 대표적이며 그 내용은 저작물 보유,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활동 실적 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를 거친 실적이 있는 자를 의미함
- 또한 법적으로 정의된 예술인의 범위는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과 결합되는 영역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의 12개 분야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표준직업분류 2009를 활용한 예술인 직업구분,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6차 개정)를 활용한 예술인 직업구분 등이 있음
- 예술인의 직업적 특징은 보험, 대출 등의 보편화된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뚜렷한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5년을 활동하던 10년을 활동하던 활동의 경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거의 이뤄져 있지 않은 실정임
- 또한 예술노동시장의 특징은 크게 단기고용, 저임금 고전문성, 높은 업무 만족도 등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 문화예술단체 근로자들은 자아성취, 보람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경제적 보상에 덜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예술가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특히, 산업화가 어려운 순수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은 창작활동 초기에는 경제적 수입이 거의 없고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복지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예술인의 분류와 공적 인정(증명) 측면에서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이 주로 적용하는 기준은 예술활동의 증명과 예술관련 소득으로 구분되며, 고용관련 통계작성기관에서는 일정한 소득에 기반한 예술관련 종사자를 조사 대상으로 함.
  - 그런 점에서 현행 취업통계조사가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외에도 소득에 기반한 프리랜서와 예술활동에 기반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모두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 정의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참조할 때 현행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기준이 “창작활동”에만 방점을 두어 예술지원인력(가령 기획, 스태프, 행정 등)이 제대로 포착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줌

## IV. 예술계열 취업자 인정기준의 개선방안

### 1. 예술계열 취업자 인정기준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및 국세DB에 연계하여 직장건강보험이나 국세청 DB에 등재된 졸업자를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외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술계열에서는 인정받는 졸업자가 많지 않음.
- 예술계열 졸업생이 주로 종사하는 예술 관련 직업군은 일반 직업군과는 달리 건강보험이나 국세청 DB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11년부터 ‘개인창작활동종사자’ 항목을 신설하여 예술 관련 직업군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추가로 인정하였음.
- 개인창작활동종사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2011년 당시 교육부에서는 예술계열 학과 교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을 제정하였고, 각 대학에서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하고 심사 후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에 합당한 졸업자는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조건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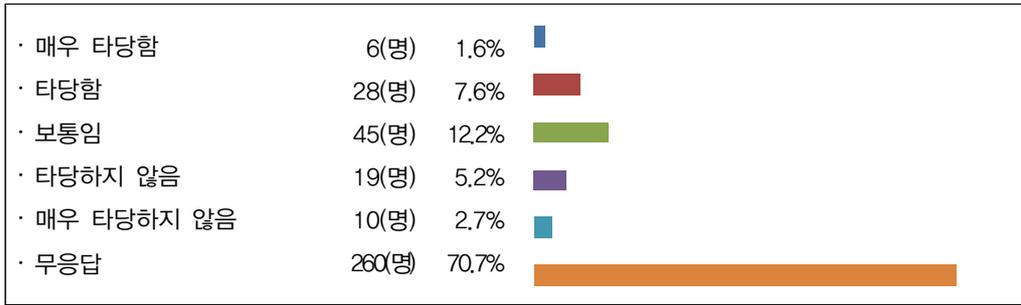
〈표 IV-1〉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조건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조건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 등록공연장</li> <li>· 횟수 : 2편 이상(서로 상이한 공연)</li> </ul> 『공연법』 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공연장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 등록미술관 및 박물관</li> <li>· 횟수 :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2회(서로 상이한 전시) 이상</li> </ul>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1호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시·도 지사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출판 및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 및 출판사 : 사업등록 3년 이상</li> <li>· 초판 : 500부 이상</li> </ul>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li> </ul> 『저작권법』 제2조에 명시된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li> </ul>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해 신고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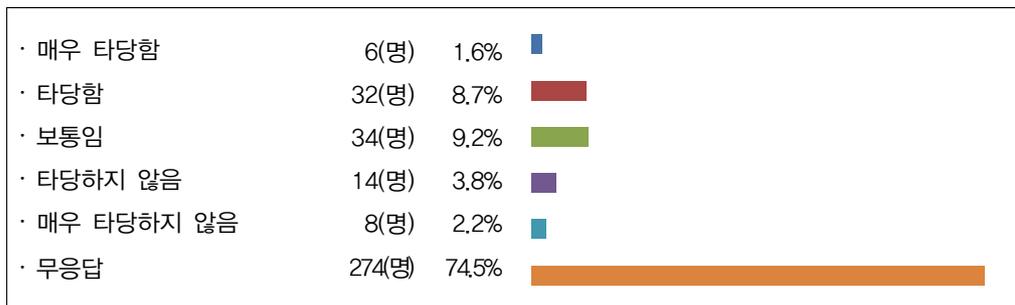
## 2. 예술계열 학과 취업자 인정 기준의 문제점 진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에 대해 예술계열 학과 졸업생 및 교수들은 인정 항목과 인정 기준이 대학을 갓 졸업한 졸업생이 갖추기에는 지나치게 좁은 인정기준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개인창작활동종사자의 항목 인정 기준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음
  - ‘11년도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제정 당시에 영화분야의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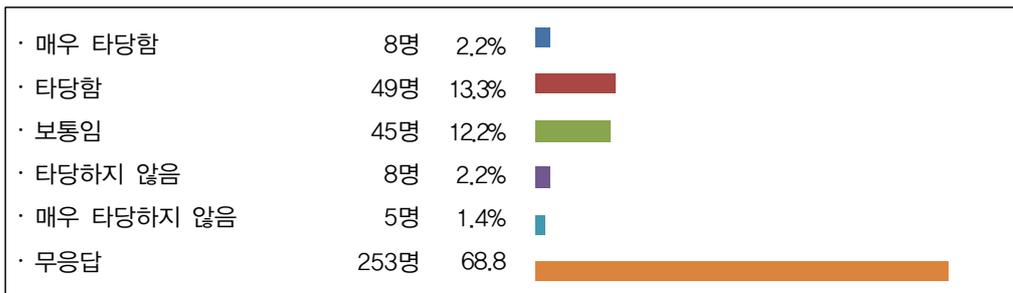
- 들은 참여하지 않아 영화계열과 관련된 인정기준 항목이 추가로 필요함
- 현행 인정기준 항목인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은 문예창작과, 극작과와 연관이 있으며 영화과 졸업생 중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경우는 극소수임
-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기획, 촬영, 무대준비 등 스태프에 대한 인정기준이 필요함
-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한 출판 및 예술활동(웹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익성도 오프라인보다 높는데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음
-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활동, 교과활동, 특기적성 활동 그리고 평생교육관련기관의 예술강사 등을 통한 강사활동으로 수업을 올리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인정 항목이 없음
- 그러므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학원 강사와는 달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한 ‘예술적 능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 목적의 예술강사를 개인창작활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 공연과 전시의 경우 장소 중심의 인정기준을 적용하는데, 거리예술 및 각종 예술제와 비엔날레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취볼 때, 장소 기준에 더해 발표 주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특히, 국제 콩쿠르 등의 해외 활동 시 이 같은 인정기준은 한계가 있음



[그림 IV-2] 인정기준 타당성 여부(출판 및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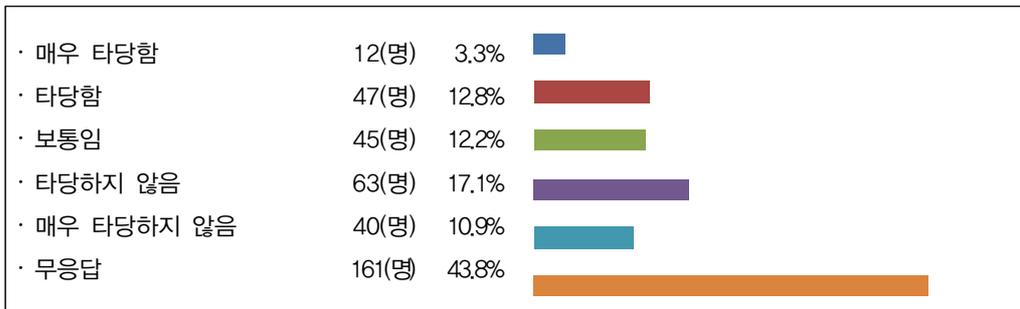


[그림 IV-3] 인정기준 타당성 여부(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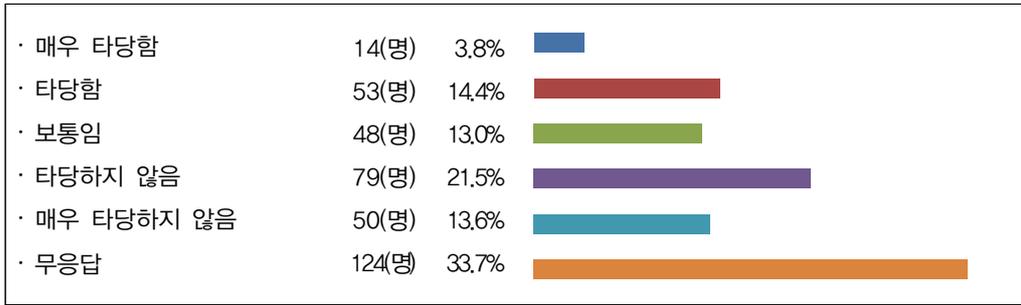


[그림 IV-3] 인정기준 타당성 여부(저작권)

- 개인창작활동종사자의 장소 인정 기준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함
  - 등록된 공연장(전시장)은 해당 공간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명성이 없는 졸업생들의 작품공연 및 전시를 허가하지 않는 곳이 많음
  - 등록된 공연장(전시장)은 방문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며,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 예술활동이 활발한 대학로의 소극장도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등록공연장(전시장)으로 등록된 장소가 극히 적음
  - 등록공연장(전시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등록을 한다 해도 실질적인 이점은 없으며 통제만 받는 상황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려고 함
  - 등록된 공연장(전시장)은 비상업적인 공간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한 전업 창작가들은 해당 공간을 활용하지 않음
  - 공간의 외부적인 면만 평가하여 장소의 수준을 나누는 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남
  -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면 예술활동이 제한적이 되며, 실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국내의 환경을 고려하여 인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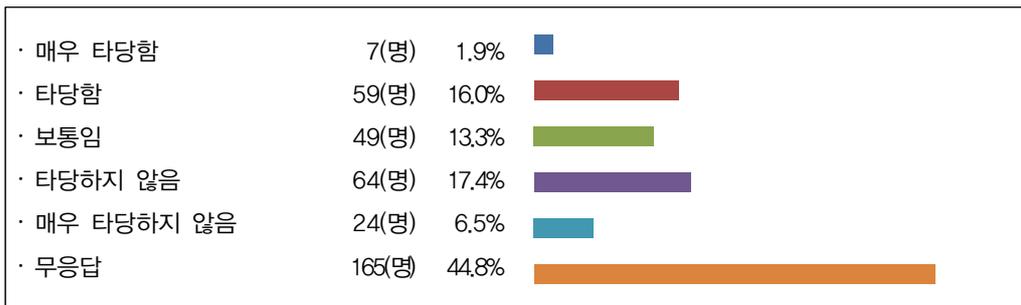


[그림 IV-4] 장소의 타당성 여부(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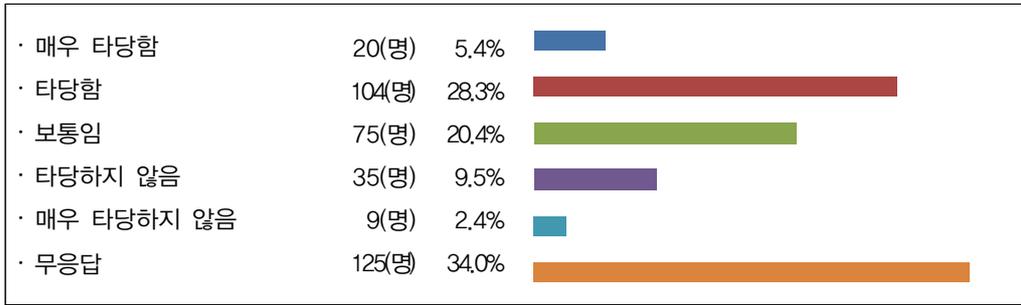


[그림 IV-5] 장소의 타당성 여부(전시)

- 개인창작활동종사자의 횡수 인정 기준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음
  - 개인전의 경우에는 경력이 10년차인 프로들도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졸업생이 개인전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 디자인계열의 경우에는 개인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임
  - 공연 및 전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 2회는 개최 자체도 힘들며, 작품의 질적인 하락도 동반되는 문제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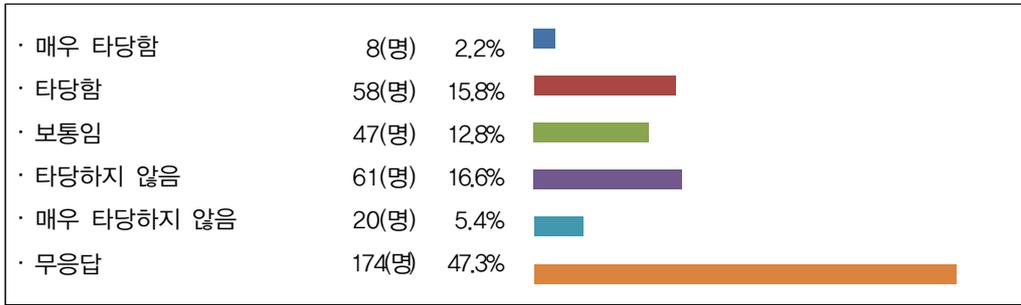


[그림 IV-6] 횡수의 타당성 여부(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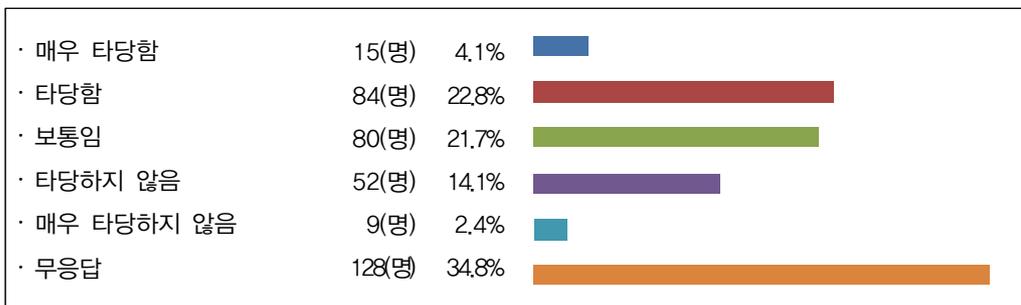


[그림 IV-7] 횡수의 타당성 여부(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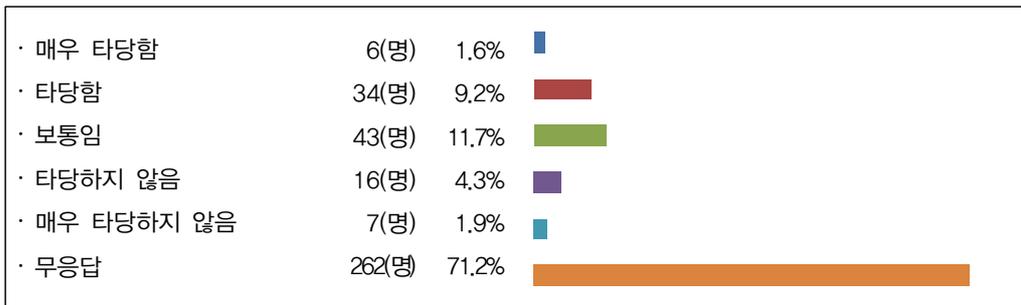
- 개인창작활동종사자의 증빙자료 기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예술분야별로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서류 구비 및 제출이 어려움
  - 졸업생이 구비하기에는 증빙자료의 종류가 너무 많으며, 졸업생이 공연장(전시장)에서 확인증 발급받는 일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팸플릿에 스태프 및 세션 등으로 공연(전시)에 참여하는 졸업생은 기재를 하지 않으며, 기재가 되어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는 취업통계 조사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임
  - 오프닝 무대, 세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 등의 작성 없이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작가나 스타일리스트 등은 대표자 한명이 기획사(업체 등)와 계약을 하고, 본인 아래에 여러 명의 보조작가(스타일리스트)를 두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어 계약서 및 세금내역 관련 서류의 구비 및 제출이 불가능함



[그림 IV-8] 증빙자료 타당성 여부(공연)



[그림 IV-9] 증빙자료 타당성 여부(전시)



[그림 IV-10] 증빙자료 타당성 여부(출판 및 출판)

### 3.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개정안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기된 장소, 횟수, 증빙자료 및 항목 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개정안을 제시함
- 인정기준의 개정을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었는데, 가장 많이 고려된 요소는 검증가능성 여부임. 취업통계 조사는 정확성의 확보를 위해 공공 DB 연계 등의 객관적 검증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조사실무팀이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야하기 때문에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기준인지 여부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음.
- 이번 개정안에는 장소와 회수 위주로 인정기준을 완화하였고 연극, 영화 등의 스태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자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특징임.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일선 예술관련 학과에서 요구하였던 부분 중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창작과 거리공연 등의 장소 범위인데,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범위안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함
-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영화 분야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의 인정을 위해 영상제작물 분야를 신설하였으며 공연, 전시 및 영상제작물에 종사하는 취업자 중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스태프에 대한 인정기준이 늘어났으며, 웹툰이나 e-book과 같은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 인정기준이 늘어났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기준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IV-2>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변동 사항

구분	기존 기준	개정안	비고
㉠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 등록공연장</li> <li>· 횟수 : 2편 이상(서로 상이한 공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장소에서 실연한 공연에 참가한 출연자 및 스태프</li> <li>-사업자등록증[종목]에 ‘공연장소’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경우만 인정</li> <li>· 횟수 : 1편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생들의 등록공연장 (전시장) 사용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장소관련 증빙자료 변경</li> </ul>
㉡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 등록미술관 및 박물관</li> <li>· 횟수 :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2회(서로 상이한 전시)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장소에서 전시에 참가한 전시자 및 스태프</li> <li>-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전시장소’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경우만 인정</li> <li>· 횟수 : 1편 이상</li> </ul>	
㉢ 영상 제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상영·게시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제작물에 참여한 자로 스태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 및 대본 작성을 포함한 영상제작물 항목을 추가</li> </ul>
㉣ 출판 및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 및 출판사 : 사업등록 3년 이상</li> <li>· 초판 : 500부 이상</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온라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개 이상인 자</li> <li>·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e-book을 출판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항목을 추가</li> <li>· 오프라인 기준은 동일</li> </ul>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른 증빙자료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IV-3〉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 변동 사항

구분	2013.12.31	2014.12.31	비고
㉠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등록증</li> <li>· 공연장에서 발급된 공연 확인서</li> <li>· 졸업자와 공연기획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출연증명서</li> <li>· 팸플릿 및 해당 공연 관련 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의 사업자등록증</li> <li>·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 확인서</li> <li>· 졸업자와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서</li> <li>· 팸플릿 및 해당 공연 관련 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생들의 등록 공연장 (전시장) 사용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장소관련 증빙자료 변경</li> </ul>
㉡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li> <li>·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 확인서</li> <li>· 졸업자와 전시기획관과의 계약서 및 전시증명서</li> <li>· 팸플릿 및 해당 공연 관련 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장의 사업자 등록증</li> <li>·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 확인서</li> <li>· 졸업자와 전시장 또는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li> <li>· 팸플릿 및 해당 공연 관련 책자</li> </ul>	
㉢ 영상 제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자와 영상제작사와의 계약서</li> </ul> <p>* 단, 개인 간의 계약관계는 불인정</p>	-
㉣ 출판 및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li> <li>· 졸업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서</li> <li>· 인쇄 증명서</li> </ul>	<p>온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업체(포털 사이트 등) 사업자등록증</li> <li>·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 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항목을 추가</li> <li>· 오프라인 기준은 동일</li> </ul>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조건 및 증빙자료 변동 사항을 반영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조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개정)

가. 정의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2014.12.31.)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

<표 IV-4>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조건(개정)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조건	
㉠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장소에서 실연한 공연에 참가한 출연자 및 스태프(※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공연장소’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li> <li>· 횟수 : 1편 이상</li> </ul>
㉡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장소에서 전시에 참가한 전시자 및 스태프(※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전시장소’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li> <li>· 횟수 : 1편 이상</li> </ul>
㉢ 영상제작물 (영화·영상· 스태프 및 연기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상영·게시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제작물에 참여한 자로 스태프 포함</li> <li>『저작권법』 제2조에 명시된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li> </ul>
㉣ 출판 및 출판	<p>온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개 이상인 자</li> <li>·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해 e-book을 출판한 자</li> </ul>
	<p>오프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 및 출판사 : 사업등록 3년 이상</li> <li>· 초판 : 500부 이상</li> <li>『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신고)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li> </ul>
㉤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li> <li>『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해 신고한 기관</li> </ul>

나. 유의사항

- 졸업을 위한 작품·공연(졸업작품)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한 과 인원의 20% 이상이 동일한 작품·공연에 포함(출연 및 공동전시 등)된 경우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증빙자료 : 대상자 전체 제출

〈표 IV-5〉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자료

실적	증빙자료		비고
㉠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의 사업자등록증</li> <li>·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li> <li>· 졸업자와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서</li> <li>· 팸플릿 및 해당 공연 관련 책자</li> </ul>		4가지 모두 제출
㉡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장의 사업자 등록증</li> <li>·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li> <li>· 졸업자와 전시장 또는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li> <li>· 팸플릿 및 해당 공연 관련 책자</li> </ul>		4가지 모두 제출
㉢ 영상제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자와 영상제작사와의 계약서</li> <li>* 단, 개인 간의 계약관계는 불인정</li> </ul>		제출
㉣ 출판 및 출판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업체(포털사이트 등) 사업자등록증</li> <li>·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계약서</li> </ul>	2가지 모두 제출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사 사업자등록증</li> <li>· 졸업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서</li> <li>· 인쇄 증명서</li> </ul>	3가지 모두 제출
㉤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기관*과의 신탁체결서</li> <li>·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li> <li>*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li> </ul>		제출

## 4. 향후 과제

- 현재 공연과 전시의 경우에는 장소 중심의 인정기준이 있으나 발표주체에 따른 인정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마당극제나 비엔날레의 경우 공연장이나 전시정이 아닌 야외나 별도로 조성된 공간에서 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해외 진출을 통한 예술활동의 경우 현행의 장소 중심의 인정기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학원의 강사와 달리 “예술적 능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2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 해당되는 문화예술교육 종사자 인정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문학분야 신춘문에 당선, 무용 및 음악분야 해외 콩쿠르 입상, 영화분야 영화제 초청참여 자등 현행 인정기준 항목인 ‘공연, 전시, 영상제작물, 출판 및 출판,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 분야로 구분하기 모호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동일한 틀로 예술장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 항목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V. 요약 및 정책제언

### 1. 연구 요약

- 우리나라는 '03년 이후 고용률이 60% 초반에 머무는 정체가 지속되어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교육-노동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 '04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정확하고 신뢰로운 통계 생산을 위해 2010년부터는 공공DB연계 조사로 실시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교육부 및 정부부처, 국회 등에서 취업 대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로 그 활용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예술계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공공 DB 연계 취업률 조사의 적절성 진단 및 보완 필요성 제기됨
- 이에 예술계열 학과에서는 예술계열 학과가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 '예술활동지수(가칭)'을 통하여 각종 평가에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예술활동 학과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부족하여 부득이 취업률을 기반으로 학과 성과가 평가되고 있는 실정임.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도 개인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정의와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졸업자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예술계열 학과의 취업자 인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계열 학과의 현실을 반영한 취업률을 생산하기 위한 취업자 인정기준 및 인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음.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고용 관련 통계 조사 현황, 예술계열 분류와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등의 문헌 연구 및 사례 분석, 예술계열 학과 졸업자들의 진로현황 파악을 위한 예술계열 학과 교수, 졸업생 및 예술계열 관련 단체·기업 전문가에 대한 면담조사, 예술계열 학과의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진로지도, 예술계 세부 분야별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 등의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인창작활동종사자 기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및 국세DB에 연계하여 직장건강보험이나 국세청 DB에 등재된 졸업자를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외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술계열에서는 인정받는 졸업자가 많지 않아 2011년부터 ‘개인창작활동종사자’ 항목을 신설하여 예술 관련 직업군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추가로 인정하였음.
-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에 대해 예술계열 학과 졸업생 및 교수들은 인정 항목과 인정 기준이 대학을 갓 졸업한 졸업생이 갖추기에는 지나치게 좁은 인정기준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계열 학과에서 제기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기준 개정안을 제시함
- 취업 통계 조사는 정확성의 확보를 위해 공공DB 연계 등의 객관적 검증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야하기 때문에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기준인지 여부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음.

- 이런 원칙하에 장소와 횟수 위주로 인정기준을 완화하였고 연극, 영화 등의 스태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자 범위를 넓혔음.
-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제외되었던 영화 분야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의 인정을 위해 영상제작물 분야를 신설하였으며 공연, 전시 및 영상제작물에 종사하는 취업자 중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스태프에 대한 인정기준이 마련되고, 웹툰이나 e-book과 같은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 인정기준도 마련하였음.

## 2. 정책 제언

- 예술계열 취업률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함.

### 가. 개인 창작활동종사자 인정 기준 개정 및 추후 작업 관련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의 개정 방향과 원칙
  - 통계의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예술계 노동시장 및 예술문화계 현실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인정기준이 개정되어야 함
  - 예술계 및 관련 대학의 요구와 국가 승인통계로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함.
  - 복잡다단한 현실을 완전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통계조사의 속성상, 점진적인 인정범위 확대 및 지속적인 인정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새로운 인정기준 적용시점 및 적용방식
  - 적용시점: 2014년도 졸업자 대상의 12월 31일자 기준 조사부터 새 기준 적용하도록 함.
  - 새 기준에 따른 데이터의 활용: 개정된 기준에 따라 파악된 “개인창작 활동종사자” 비율은 건보DB 연계취업자 자료보다 예술계열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향후 정부의 대학 평가 및 지원 사업에서는 예술계열의 경우 이 지표를 반영하고, 대학정보공시에서도 건보DB연계 취업률 대신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및 프리랜서 비율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대학정보공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과 및 계열의 특성을 감안하여 취업률을 대신할 성과지표를 공시하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판정 기구의 구성 및 활용

- 개정된 인정기준에 맞춰 대학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의 판정은 KEDI 취업 통계팀 실무자들 대신에 세부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의 책임아래 판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이 위원회는 대학에서 제출한 전시 및 공연 증빙자료가 졸업작품의 전시 및 공연인지를 가려내고, 분야별로 특정 행위(증빙자료)가 예술 창작활동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일련의 판정 과정을 통해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기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주도해야 할 것임.
- 분야별 심의에는 예술인복지법 ‘예술활동증명 인정지침’을 참조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나. 취업률 산정공식의 재검토 필요

- 취업률 조사가 대학의 다양한 입장과 처지를 반영하다 보면 “취업률”의 의미에 일관성이 사라지고 왜곡이 발생하여 통계의 객관성과 시계열적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 국가 승인통계로서 취업통계가 견지해야 할 보편성과 객관성,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취업” 및 “취업률”의 의미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는 정부당국의 노력이 필요함.
- 취업률은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일 뿐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비교가능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함. 이 점에서 특정계열 학과 졸업생들에게 특화된 성과지표인 개인창작활동종사자를 모든 대학졸업자의 진로 정보 통계치인 취업률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범위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협의회에서는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기준이 “근로활동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이라는 취업의 개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지금까지 각종 대학평가 사업에 취업률이 비중있게 활용되면서 2011년 당시에 예술계열 대학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창작활동종사자가 12월 31일자 취업률 조사에서 취업자로 반영되었지만, “취업”의 핵심을 이루는 ‘경제적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예술 활동 자체를 취업활동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그런 점에서 향후 취업률 조사에서 경제적 수익이 수반되지 않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를 취업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함.

- 이 경우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입대자나 진학자처럼 졸업 후의 진로 상황을 보여주는 진로 유형의 하나로 설정하되, 취업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을 통한 최소한의 수입정보(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연간 120만원 기준) 관련 증빙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예술계 노동시장의 특성상 대학졸업 직후의 졸업생들이 예술활동을 통한 경제적 수익창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인창작활동종사자를 예술활동 종사자 정보로 한정하고 예술계열은 취업률 정보 대신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비율로 대학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다. 예술계열 대학 평가를 위한 대안적 평가지표의 개발 필요

- 정부는 2015년부터 예술계열 대학 평가에서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발표함
- 그간에 교육부 평가에서 계열의 특성과 교육목표를 불문하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비중있게 활용되어 왔으며(아래 <표 V-1> 참조), 이로 인해 인문계열과 예술계열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교육부에서 2015학년도 이후의 평가지표에서는 예술계열을 제외하기로 하여 각종 평가와 관련된 예술계열 관계자들의 우려와 불만은 상당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표 V-1〉 교육부의 취업률활용 평가 지표 현황

분류	담당부서	활용사업명	취업통계 반영비율	기준일자별 반영비율(%)			
				6.1.	12.31.	유지	
대학 평가 지표	대학재정지원과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13년 종료)	15%	80		20	
	전문대학정책과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13년 종료)	25%	80		20	
	지역대학육성과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6~7%	40	20	40	
	지역대학육성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6~7%	40	20	40	
	전문대학정책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I:단일 특성화, II:복합 특성화, III:프로그램특성화, IV:평생직업교육대학)	I, II 유형	13%	80		20
			III 유형	14%	80		20
			IV 유형	10%	80		20
	산학협력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대학	1~4%	50	50	-
			전문대	2~7%	50	50	-
	대학재정지원과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ACE)	4%	40	20	40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일부	-	-	100		
대학 구조 조정	대학재정지원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14)	대학	15%	40	20	40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14)	전문대	20%	40	20	40
	대학재정지원과	·경영부실대학 지정( '14)	5%	40	20	40	
공시	교육통계과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	2회 공시(8월, 11월)				

○ 그러나 특정 계열의 평가에 취업률을 적용하지 않게 될 때의 보완책이 필요함. 예술계열과 인문계열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이들 계열에 취업률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 공표 이후, 교육기본통계(KEDI 7대 계열) 분류상 타 계열에 속해있던 학과 및 전공을 예술계열로 옮기려는 대학 측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음 이 경우 대학의 요구를 받아 희망하는 학과의 분류를 예술계열로 바꿀 경우 머지않아 예술계열 학생정원이 사회적 수요에 비해 과다하여 예술계의 입지와 예술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선부른 계열 전환 시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대안적이고 유의미한 예술 계열 학과의 교육성과 지표를 제시,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단기적으로는 졸업자 대비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및 프리랜서 비율을 정보공시와 평가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라. 중장기적 과제

- 예술계열 대학교육의 목적 달성 정도를 중장기적으로 확인, 평가하기 위한 가칭 “예술 활동 지수” 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피드백 할 뿐 아니라 예술계열 대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에서 예술계열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달라서 예술인과 예술 활동의 관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임. 심지어 문화부 산하 기관들 간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의 직업구분을 ‘11개의 장르’, ‘예술활동증명’ 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문화콘텐츠진흥원은 ‘7개의 장르’ 로 구분하고 있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음.
  - 국가 수준의 통계작성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예술인 및 예술활동의 (직업 분류) 활동기준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들 간의 통합연구가 필요하며,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별대학의 소속학과들이 중장기적으로 예술을 활성화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예술활동 지수”, [붙임4]) 를 개발하고, 이를 대학교육의 질 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팀에서는 예술인복지재단을 비롯한 예술관련 기관에서 진행 중인 예술인 직군 분류작업과의 연계성을 높여서 사회적으로 통용 가능한 예술인, 예술활동 종사자의 의미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창작활동종사자의 범위를 주기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임.
  - 전문가협의회 및 예술계열 학생 및 종사자들 대상의 면담에서는 일정한 공연장 밖의 거리예술의 활성화 경향과 온라인 유튜브 등을 통한 창작이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들 공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음, 그러나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입장에서 제한된 일정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여야 한다는 원칙을 양보하기 어려워 이번 연구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정도에 그침.

- 통계는 사회현상을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계량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실제 현실과 통계적 수량화 과정에는 본질적으로 일정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괴리를 최소화할 때 통계자료의 현실적합성이 높아짐. 그러므로 조사대상 영역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조사지침과 분류기준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연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취업률 조사 시기와 관련하여,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조사와 건보DB 연계 조사 시점의 차이로 인해 예술계 학과들이 건보DB 연계 취업률이 높은 타 계열에 비해 대학 내 평가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등의 사업이 종료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취업률 조사 시점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취업률 지표의 활용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양적 취업률 위주의 활용에서 정규/비정규직 여부, 급여수준, 직업 만족도등의 질적 취업 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예술계의 산업인력에 대한 직무 분류와 정의 부재한 예술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산업인력의 수요를 측정한다는 것은 표본의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통계 결과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정보 공시의 목적이 교육수요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 제공에 있다면, 예술대학에 진학한 교육 수요자와 그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예술계 취업률 조사는 취업률 공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취업률 공시의 적합성 및 공시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예술대학에 진학한 교육 수요자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성공한 1인의 예술가, 창의적 예술인이 되는 것인 바, 예술대학의 인력 양성 방향에 대한 정책은 취업률이 아닌 예술 인력의 특징(산업분야에서의 성공 불확실, 대부분 소규모 사업 단위,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 발생, 높은 임금 격차, 금전적 보상에 대한 기준과 기대가 타 분야와

상)을 반영한 조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술계 대학은 예술계 대학 지망생의 수요를 예술인력 수급정책과 정보 공시에 반영한다면 교육수요자에게 현실에 가까운 통계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로를 준비한 예비 예술인인 예술계 대학 지망생의 수요가 예술관련 산업의 수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측정 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바, 높은 입시경쟁률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음, 따라서 이를 예술인력 수급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예술관련 산업 분야는 새로운 융복합 분야의 창직, 창업이 가능한 분야인 바, 예술대학의 평가는 예술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예술인력 인큐베이팅 등을 고취,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문화예술 융성을 위해서는 예술계의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관련 산업과 직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예술관련 산업은 그 특성상 전문성과 수월성을 지향하므로, 대학이 미래 예술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적 창의성과 전문성, 수월성을 제고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예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임. 따라서 공공DB 연계 취업률 조사로 인한 예술계 학과의 통폐합이 대학 구조조정에 우선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계 인력의 특수성을 반영, 장려하는 정책이 시급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예술계열 학과의 특수성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타계열의 학문적 특수성, 성별 특수성,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취업 성과 지표의 발굴 및 적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임

## 참 고 문 헌

- 강영혜 외(20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공공DB연계 취업통계조사 및 통계자료집 발간 사업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 외(2012a)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및 통계자료집 발간 사업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 외(2012b) 국가 고등교육통계체제 구축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고정민 외(2010) 주요국가 문화예술통계 실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공은배 외(2011) 교육분야 통계 수집·관리·활용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소영 외(2013) 예술지수(Arts Index)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김승용 외(2012) 고등교육기관 학부·과(전공) 표준코드 개발 및 관리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을식 외(2010) 지역 고용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김효정 외(2013)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효정 외(2011) 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현장 연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효정 외(2010) 정부 고용지원정책과 연계한 문화예술분야 고용정책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홍규 외(2013)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류정아 외(2011)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남진 외(2013) 2013 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 박소현 외(2011) 2012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trend)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조원 외(2013)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박영정 외(2012) 예술인 범위·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 백현주 외(2013) 공연예술 계약 사례연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주엽 외(2008) 문화예술 전문인력 직종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양건열 외(2013) 시각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건열 외(2009) 예술분야 고용시장 분석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외(2011)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실행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어수봉 외(2013) 취업의 질관리를 위한 취업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전병태 외(2012) 창조경제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추미경 외(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적자원 관리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허은영 외(2010) 예술 분야 일자리 특징 및 인력 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황준욱 외(2009) 문화·예술산업 근로실태 조사 및 근로자 보호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콘텐츠산업통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붙임1]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설문지

**예술계열 취업률 개선연구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개정 의견 조사

\*\* 응답자 소속 및 성명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은 2004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국세청 자료를 연계하여 일정 소득기준 이상인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를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계열 졸업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인적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로써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술계열 학과 교수님들과 졸업생들이 개인창작활동종사자의 인정기준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예술계열 취업통계 개선 연구’ 를 통해 개인창작활동종사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저희 연구를 위해 의견을 내어 주셔서 예술계열 취업통계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과장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금번 ‘예술계열 취업통계 개선 연구’ 에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개선안은 2015년 취업통계조사부터 적용하여 예술계열의 취업현실을 적극 반영한 취업통계조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6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수님께서 소속된 학과 및 해당 분야에만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응답지는 7월 7일까지 이메일(swiss@kedi.re.kr)로 송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일

**연구책임자 이기준(취업통계팀장) 올림**

※ 본 조사지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엽승현	☐ 전화 : 02)3460-0463
	☐ 이메일 : swiss@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책임자 이기준	☐ 전화 : 02)3460-0356

○ 현행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조건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조건	
㉠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 등록공연장</li> <li>· 횟수 : 2편 이상(서로 상이한 공연) 『공연법』 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공연장</li> </ul>
㉡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 등록미술관 및 박물관</li> <li>· 횟수 :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2회(서로 상이한 전시)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1호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시·도 지사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li> </ul>
㉢ 출판 및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 및 출판사 : 사업등록 3년 이상</li> <li>· 초판 : 500부 이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li> </ul>
㉣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저작권법』 제2조에 명시된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li> </ul>
㉤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위탁관리 에 관해 신고한 기관</li> </ul>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증빙 자료

실적	증빙자료	비고
㉠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등록증</li> <li>·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li> <li>· 졸업자와 공연기획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출연증명서</li> <li>· 팸플릿 또는 해당 공연 관련 책자</li> </ul>	4가지 모두 제출
㉡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li> <li>·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li> <li>· 졸업자와 전시기획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전시증명서</li> <li>· 팸플릿 또는 해당 전시 관련 책자</li> </ul>	4가지 모두 제출
㉢ 출판 및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li> <li>· 졸업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서</li> <li>· 인쇄 증명서</li> </ul>	3가지 모두 제출
㉣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li> </ul>	제출
㉤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기관*과의 신탁체결서</li> <li>·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li> </ul> <p>*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한국방송실연자연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p>	2가지 모두 제출

## 1. “공연”에 대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조건

### 조사 현황

- 공연과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장소 : 등록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공연장)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

- 횟수 : 2편 이상(서로 상이한 공연)
- 증빙자료
  - 공연장 등록증
  -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
  - 졸업자와 공연기획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출연증명서
  - 팸플릿 또는 해당 공연 관련 책자

1) 공연에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중 ‘등록공연장’이라는 장소의 타당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 1)번 문항의 답변이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답변

1-1) 위에 제시된 ‘등록된 공연장’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1-2) 공연의 장소 인정 기준이 조정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개정되었으면 하십니까?

2) 공연에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중 ‘2회 이상(서로 상이한 공연)’이라는 횟수의 타당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 2)번 문항의 답변이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답변

2-1) 2회이상(서로 상이한 공연)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2-2) 공연의 횟수 인정 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3) 공연에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중 증빙자료의 타당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3-1) 1-2), 2-2)번 문항과 같이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인정기준이 개정될 때 어떠한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공연의 인정기준인 장소와 횟수 이외에 추가로 인정이 필요한 기준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2. “전시”에 대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조건

**조사 현황**

○ 전시와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장소 : 등록미술관 및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1호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시·도 지사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횟수 :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2회(서로 상이한 전시) 이상
- 증빙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
  - 졸업자와 전시기획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전시증명서
  - 팸플릿 또는 해당 전시 관련 책자

1) 전시에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중 ‘등록미술관 및 박물관’이라는 장소의 타당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 1)번 문항의 답변이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답변

1-1) 등록미술관 및 박물관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1-2) 전시의 장소 인정 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개정되기를 바랍니다까?

2) 전시에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중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2회(서로 상이한 전시) 이상’이라는 횟수의 타당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 2)번 문항의 답변이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답변

2-1)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2회(서로 상이한 전시) 이상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2-2) 전시의 횟수 인정 기준이 조정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개정되기를 바랍니다까?

3) 전시에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중 증빙자료의 타당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3-1) 1-2), 2-2)번 문항과 같이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인정기준이 개정될 때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전시의 인정기준인 장소와 횟수 이외에도 추가로 인정해야 할 다른 기준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3. “출판 및 출판”에 대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조건

#### 조사 현황

- 출판 및 출판과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출판 및 출판사 : 사업등록 3년 이상(『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초판 : 500부 이상
- 증빙자료
  -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
  - 졸업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서
  - 인쇄 증명서

- 1) 출판 및 출판에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중 ‘사업등록 3년 이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 출판 및 출판사’라는 기준의 타당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 1)번 문항의 답변이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답변

1-1) 사업등록 3년 이상의 출판사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1-2) 출판 및 출반의 출판사 인정 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개정되기를 바랍니다까?

2) 출판 및 출반에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중 ‘초판 : 500부 이상’이라는 부수의 타당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 2)번 문항의 답변이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답변

2-1) 초판 : 500부 이상 이상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2-2) 출판의 부수 인정 기준이 조정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개정되기를 바랍니다까?

3) 출판 및 출반에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중 증빙자료의 타당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3-1) 1-2), 2-2)번 문항과 같이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인정기준이 개정될 때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출판 및 출반의 인정기준인 출판사와 부수 이외에 추가로 인정이 필요한 기준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4.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에 대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조건

**조사 현황**

-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과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저작권법」 제2조에 명시된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 증빙자료
    -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

1)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에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인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의 타당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 1)번 문항의 답변이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답변

1-1)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1-2)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인정 기준이 조정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개정되기를 바랍니다까?

**1-3) 1-2)번 문항과 같이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인정기준이 개정될 때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현행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의 인정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기준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5.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에 대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조건

**조사 현황**

-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과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여부(『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해 신고한 기관)
    - 증빙자료
      - 신탁기관\*과의 신탁체결서
      -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1)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에 관련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인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여부’의 타당성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타당성 정도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임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1)번 문항의 답변이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답변

1-1)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여부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1-2)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인정 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1-3) 1-2)번 문항과 같이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인정기준이 개정될 때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의 인정기준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기준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6. 추가적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기준 및 조건

- 1) 현재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공연, 전시, 출판 및 출판,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의 5개 분야에 걸쳐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2) 1)에서 추가로 제시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분야의 인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합니까?

- 3) 2)에서 추가로 제시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분야의 인정 기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해야 합니까?

7. 응답학교 정보(해당부분에 체크)

대학 소재지		학제구분				전공영역(KEDI중분류)	
분류	체크	분류	체크	분류	체크	분류	체크
①서울		①일반대		①종합대		①디자인	
②부산						②응용 예술	
③대구						③무용· 체육	
④인천						④미술· 조형	
⑤광주						⑤연극· 영화	
⑥대전						⑥음악	
⑦울산							
⑧세종							
⑨경기		②전문대		②예술계 단일대 학			
⑩강원							
⑪충북							
⑫충남							
⑬전북							
⑭전남							
⑮경북							
⑯경남							
⑰제주							

[붙임2]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설문결과 분석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 ① 조사개요

- 목적 : 예술계열 취업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 기간 : 2014. 7. 2 ~ 7. 7
- 대상 : 각 대학(전문대학)의 예술계열 학과장 및 교수 (응답 : 368명)
- 방법
  - 예술계열이 있는 각 대학(전문대학)에 공문으로 설문조사 협조 요청
  -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메일로 회신
  - 해당되는 항목에 한해서만 응답
- 문항 : 6개 분야별 40문항

### ② 조사결과

#### ○ 주요 의견

- ① 현행 개인창작활동종사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확대)해야 함

#### [공연/전시]

- 장소 기준범위를 확대해야 함
  - 등록된 공연장(전시장)은 사회초년생인 졸업생이 접근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기성작가들도 기획전에 초대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
  - 등록된 공연장(전시장)은 비상업적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한 주로 전업의 창작가들은 해당 공간을 활용하지 않음
- 횟수 기준범위를 완화해야 함

- 사회초년생인 졸업생이 개인전을 개최하는 것 또는 단체전을 2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공연(전시)을 준비하는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 극단의 경우에는 입단부터 무대에 서기까지 3년의 훈련과정을 거침

**[출판 및 출판]**

- 인터넷 출판, 음원발매도 인정
  -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E북 및 웹툰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로 해당 부분에 대한 인정기준이 필요함
  - 음반의 경우, 기성가수들도 음반발매보단 음원출시를 하는 추세임
- 초판 부수의 기준을 완화해야 함
  - 초판 500부는 신진작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부분이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웹툰 및 E북 출판이 활성화 되고 있어 부수에 대한 기준자체의 필요성에 의문
- ② 증빙자료를 간소화해야 함
  - 현행 증빙자료의 준비자체가 졸업생들에겐 어려운 부분임
  - 팸플릿, 관련 책자, 공연(전시) 활동 사진 등 제출로 대체
- ③ 스태프, 예술관련 사설 학원강사, 공모전입상자들도 인정필요

○ **응답학교 기본정보**

① 지역별 응답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응답수	72	30	10	7	14	8	0	13	59
비율(%)	19.6	8.2	2.7	1.9	3.8	2.2	0.0	3.5	16.0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무응답	총
응답수	14	12	17	19	7	24	9	1	52	368
비율(%)	3.8	3.3	4.6	5.2	1.9	6.5	2.4	0.3	14.1	100.0

② 학제구분별 응답자

학제별	일반대	전문대	무응답	총
응답수	169	122	77	368

특성별	종합대	예술계 단일대학	무응답	총
응답수	223	46	368	368

③ 전공영역별 응답자

전공별	디자인	응용예 술	무용체 육	미술조 형	연극영 화	음악	무응답	총
응답수	117	31	18	59	36	53	54	368
비율(%)	31.8	8.4	4.9	16.0	9.8	14.4	14.7	100.0

○ 문항별 응답현황

① 공연

항목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무응답	총
장소	12	47	45	63	40	161	368
횟수	7	59	49	64	24	165	
자료	8	58	47	61	20	174	

② 전시

항목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무응답	총
장소	14	53	48	79	50	124	368
횟수	20	104	75	35	9	125	
자료	15	84	80	52	9	128	

③ 출판 및 출판

항목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무응답	총
기준	6	28	45	19	10	260	368
부수	4	26	42	21	9	266	
자료	6	34	43	16	7	262	

④ 시나리오

항목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무응답	총
기준	6	32	34	14	8	274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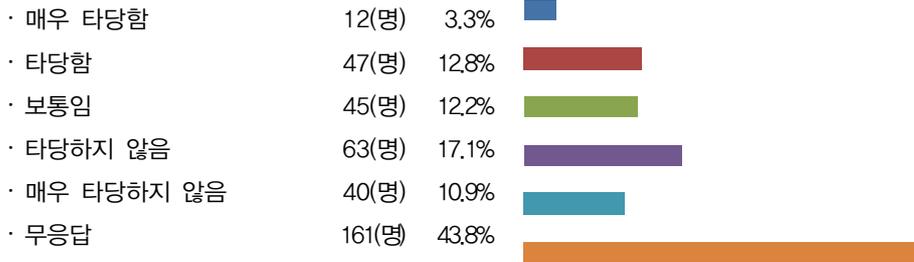
⑤ 저작권

항목	매우 타당함	타당함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무응답	총
기준	8	49	45	8	5	253	368

## [참고]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 ○ 공연

#### 1. 장소의 타당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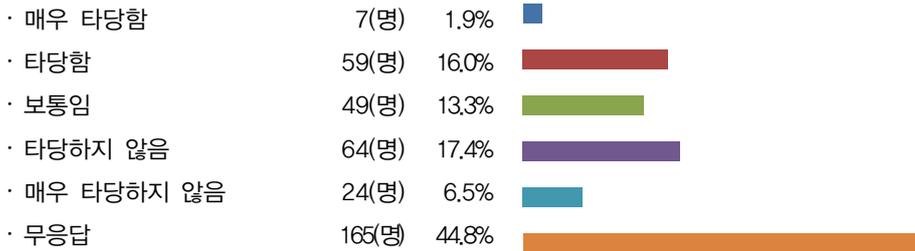
#### 1-1. 타당하지 않은 사유

- 사회 초년생인 졸업생들이 등록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교수들도 등록된 공연장에서 공연하기 쉽지 않음
  - 등록된 공연장을 보유 중인 학교들만 유리하며, 형평성에 어긋남
  - 대관료가 비싸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도 큼
- 장소가 한정될 경우, 창작활동에 제한이 따름
  - 요즘 추세는 소규모 공연장, 갤러리, 대안공간, 카페 또는 길거리 공연이 많음
  - 창작활동이 제한되면 관객 동원력이 떨어지고, 대중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발생

#### 1-2. 개정방안

- 장소 인정기준을 확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랑, 갤러리, 소규모 공연장까지 확대
  - 거리공연, 야외공연 등도 공연 주최 측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
- 장소 제한을 폐지
- 국내외 입상경력, 공모전 참여자들도 확인서류를 통해 인정

## 2. 횡수의 타당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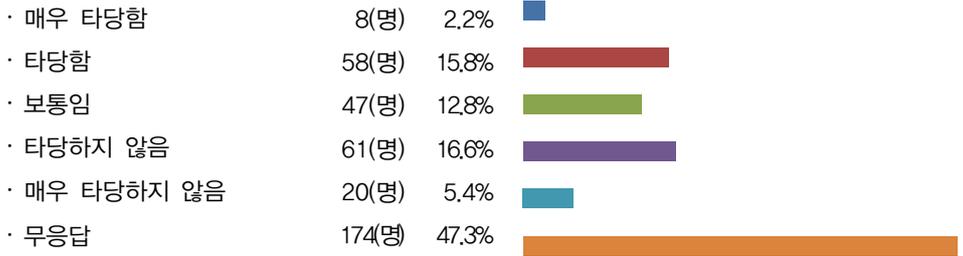
### 2-1. 타당하지 않은 사유

- 사회 초년생인 졸업생의 연 1회 공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됨
  - 예술적 완성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가지지 않음
  - 실질적으로 졸업생을 바로 수용 가능한 무대가 적으며, 무대 위에 서기까지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함
  - 극단의 경우에는 입단 후 무대에 서기까지 훈련과정 등 3년이 소요됨
- 장기공연의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작품참여가 어려움
- 공연 횡수보다는 작품의 질이 중요한 부분임

### 2-2. 개정방안

- 공연 1회 이상은 인정
  - 모든 공연은 전부 인정
  - 공연의 횡수보다는 지속성을 기준으로 해야 함
- 공연 횡수 기준을 폐지
- 장소 제한이 없을 경우 연 2회 인정기준 유지(단체전)
  - 단, 기준에서 '상이한 공연' 의 조건은 삭제
  - 공연기간이 4주 이상이면 2회로 인정

### 3.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 3-1. 인정기준 개정 시, 증빙자료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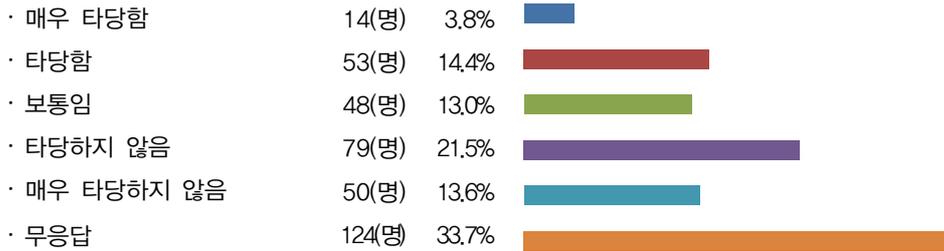
- 현행 증빙자료의 간소화가 필요함
  - 계약서 및 확인서는 졸업생이 발급받지 어려운 부분임
  - 계약서의 경우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음
  - 팸플릿, 공연 관련 책자, 공연 주최자의 확인증, 공연 인증사진 등 제출
- 공연 주최자, 관청의 신고서(야외공연, 거리공연)
- 공모전 입상 증명서, 협회주관 연주 증명서,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재단 후원 증명서

### 4. 추가 인정 기준

- 공모전 입상
  - 공공문화재단의 지원 선정, 레지던시 입주 경력 등을 기준으로 전국규모 공모전 입상
- 공공문화재단의 작가지원 프로그램 선정경력
- 극단등록증, 극단대표 입단확인서
- 스태프 인정
- 앨범제작 및 연습생으로 등록된 자도 인정

○ 전시

1. 장소의 타당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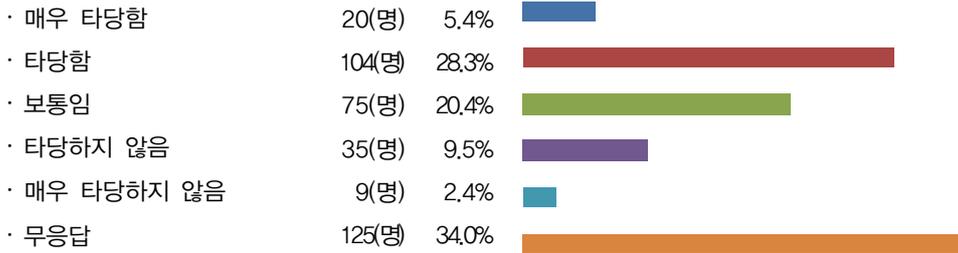
1-1. 타당하지 않은 사유

- 사회 초년생인 졸업생들이 등록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전시가능한 공간은 소규모사업체, 비영리단체로 등록 장소가 아님
  - 사회초년생이 미술관,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
  - 시각예술 전업 작가는 수입을 얻기 위해 상업적인 장소에서 전시를 하며, 미술관 (박물관)에서 전시하지 않음
  - 거의 1년 일정이 예약되어 있으며, 장소의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음
- 장소가 한정될 경우, 창작활동에 제한이 따름
  - 요즘 추세는 소규모 전시장, 갤러리, 대안 공간, 개인화랑, 카페 전시가 많음

1-2. 개정방안

- 장소 인정기준을 확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랑, 갤러리, 소규모 전시장까지 확대
  - 지역 협회의 강당이나 대학 내 전시실도 인정
- 전시 결과만을 인정하며, 장소 기준은 폐지

## 2. 횡수의 타당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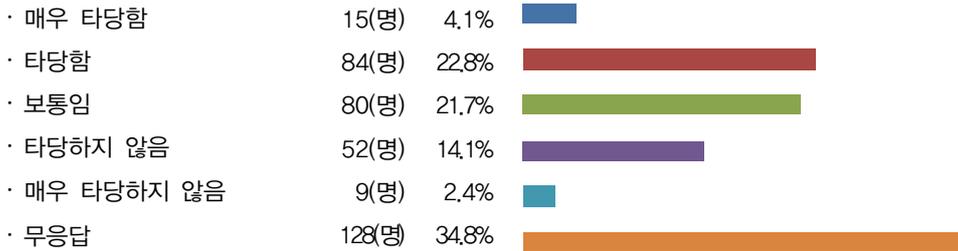
### 2-1. 타당하지 않은 사유

- 1년 2회 규정은 비현실적임
  - 전시는 개인 스케줄에 의해 결정이 됨
  - 예술의 완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단체전 1회로만 인정
  - 졸업 후 바로 실력을 인정받아 개인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디자인계열은 개인전 자체가 불가능 함
  - 졸업 후 단기간에 등록된 장소에서 전시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2-2. 개정방안

- 단체전 1회로 기준 완화
  - 개인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상이한 전시' 문구 삭제

### 3.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 3-1. 타당하지 않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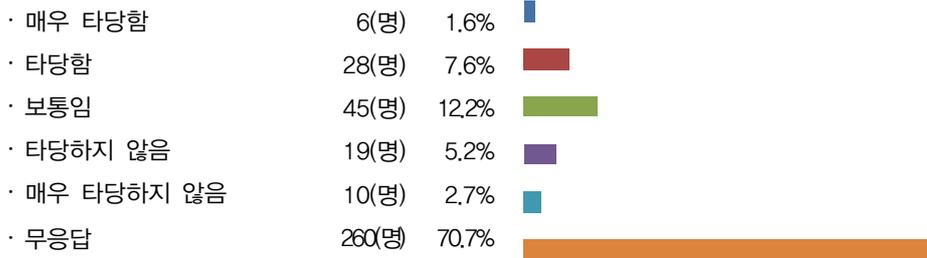
- 졸업생이 전시기획기관과 계약에 따라 전시가 진행되는 경우도 극히 일부로 한정됨
- 증빙자료 간소화 필요
  - 전시확인서, 계약서, 전시증명서 대신 팸플릿, 전시 관련 책자로 완화
  - 현행 기준의 증빙자료 구비는 매우 어려움

### 4. 추가 인정 기준

- 팸플릿, 전시관련 책자, 전시 증명 사진으로만 인정
- 대학에서 증빙 가능한 자료로 대체
- 공모전 ,수상실적을 포함(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판 및 출판

1. 사업자등록 기준의 타당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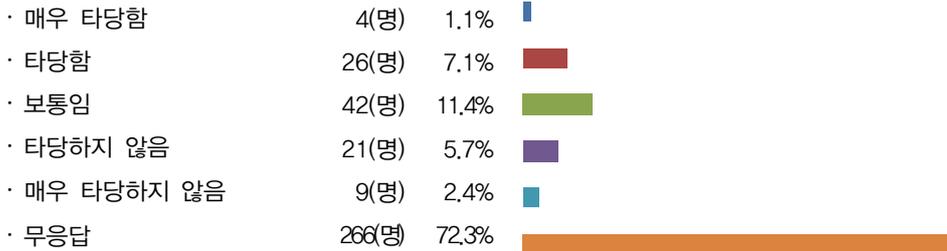
1-1. 타당하지 않은 사유

- 출판사 사업자등록 3년 이상 기준이 비현실적임
  - 최근 출판사가 허가제로 변경되며 기준도 엄격해진 관계로 3년이라는 기간이 출판사의 질과 연결되는 것은 아님
  - 출판사의 사업등록 기간을 확인하고 선정하는 경우는 없음
- 사회초년생인 졸업생이 졸업 후 바로 출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졸업 후 바로 출판사에서 출판에 대한 허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요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독립출판도 인정이 필요

1-2. 개정방안

- 출판사 사업자 등록기간 기준 1년으로 완화
- 등록된 출판사, 온라인 출판사도 포함 (납세자료 여부로 인정)
- 웹툰 및 E북 출판 인정

## 2. 초판 부수의 타당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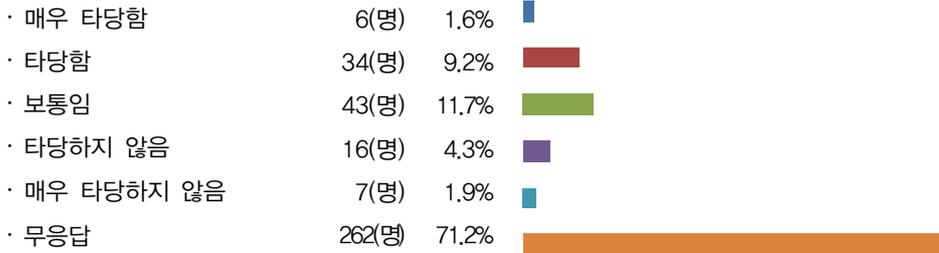
### 2-1. 타당하지 않은 사유

- 단체 출판인 경우, 부수를 선택할 수 없음
- 신진작가들에게 500부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수임
  - 신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막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음반의 경우, 디지털 음원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음원개념으로 부수는 상관이 없음

### 2-2. 개정방안

- 인정 부수를 100~300부로 완화
- 인터넷 창작물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자책의 경우도 인정이 필요
- 앱과 온라인을 통해 출시한 출판물의 경우, 출판물의 완성도, 길이, 출판매체를 통한 평가 필요
-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출판(출반) 증빙서류만 있으면 인정

### 3.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 3-1. 타당하지 않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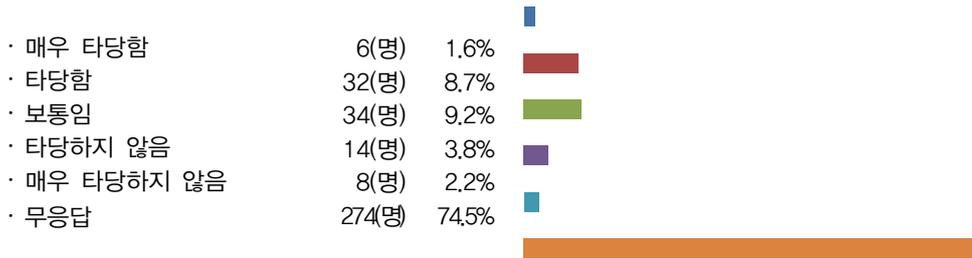
- 출판 및 배급사와 계약 없이 개인적으로 직접 유통사와 거래하는 경우도 있음
  - 발표 작품이 유통 중인 주요 사이트의 해당 웹페이지로 증빙하는 방법이 합리적
- 음원에 대한 추가적인 인정기준이 필요

### 4. 추가 인정 기준

- 집필계획서나 출판물에 대한 ISBN으로 인정
- 신춘문에 당선자, 공모전 당선자들에 대한 추가 인정(공모/당선 확인서)
- 서비스 URL, 회원수, 조회수 등으로 인정
- 웹게재 확인서, E북(전자책 발행기관의 출판 증명서)

○ 시나리오

1. 기준의 타당성 여부



1-1. 타당하지 않은 사유

- 시나리오가 실제 영상으로 제작되는 경우는 극소수임
  -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기성작가로 인정받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
- 특정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 하에 제작되기보다는 개인 경비조달로 영상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함

1-2. 개정방안

- 시나리오 완성 후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는 모두 인정
- 계약서가 아닌 영상이 상영될 당시의 증빙사진이나 자료로 대체
- 만화 스토리 부분에 대한 인정기준이 필요

1-3. 인정기준 개정 시, 증빙자료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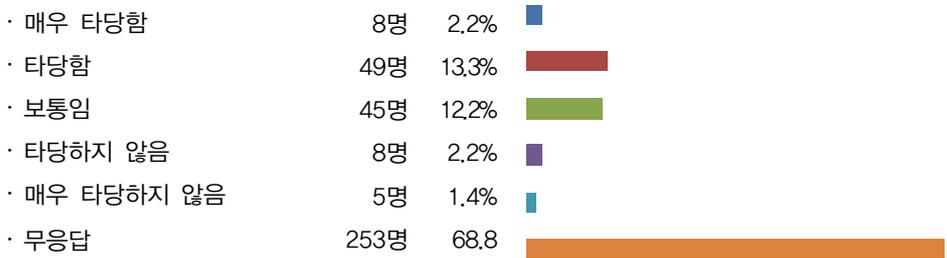
- 시나리오 저작권 등록증
- 방송국이나 프로덕션과의 계약서
- 용역비를 받은 급여내역, 원천징수 내역
- 상영 현장 사진, 포스터, 리플렛
- 영상물 엔딩 크레딧, 타이틀 명단

## 2. 추가 인정 기준

- 단편영화 연출로 인한 영화제 입상(연출 및 제작)
-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제작사의 결정사항이 때문에 졸업생이 시나리오 작성을 한다고 바로 영상화 되는 것은 아님
  - 시나리오 출판만으로도 인정이 필요
- 공모전과 문학상 수상내역도 반영하여 인정이 필요(공모전 사실 확인서)

### ○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 1. 기준의 타당성 여부



#### 1-1. 타당하지 않은 사유

- 사회초년생의 경우, 저작권까지 인정받는 것은 어렵고 현실적으로 작품에 대한 보수 정도로 대가 지급받음
- 졸업하고 1~2년 내 작품수익을 내는 것은 어려운 부분임
  - 창작물 제작기간이 평균 6개월정도 소요되며, 수익창출 시기는 그 후 6개월~1년이 더 소요됨
  - 대학과의 계약도 인정이 필요
- 수익에 대한 최소기준이 필요

#### 1-2. 개정방안

-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증빙서류만으로도 인정 필요

### 1-3. 인정기준 개정 시, 증빙자료 종류

- 저작권등록 확인서 제출
- 업체와의 계약서, 방송사(외주제작사)의 사업자 등록증

### 4. 추가 인정 기준

- 저작권 등록을 진행 중인 증빙서류로도 인정 가능
- 대학과 학생의 계약도 인정

#### ○ 추가적인 인정 기준 및 조건

##### 1. 추가 인정 분야

- ① 스태프 분야도 인정이 필요
  - 작가, 출판사의 편집인, 교정인, 스크립터 등은 프리랜서라는 인식 및 관행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을 안함
- ② 주문제작에 의한 작품활동도 인정이 필요
- ③ 디자인 분야 프리랜서도 개인창작으로 인정 필요
- ④ 전문대학 NCS교육과정 및 평생교육직업대학의 예술전문가과정의 도슨트, 에듀케이터, 큐레이터, 준학예사, 학예사 교과목 이수자(1년 이상) 추가 인정 필요
- ⑤ 예술관련 학원강사도 인정이 필요
- ⑥ 온라인 분야(디지털 교재, E-BOOK)에 대한 인정 필요

## 2. 1)에서 추가로 제시한 분야의 인정 기준 설정

- ① 업체와의 계약서, 본인이 참여한 작품 관계 사실증명서
- ② 1년에 캔버스 기준 10호 이상 및 한지 기준 전지3장 이상 규격 2작품 / 100호 이하 50호 이상 및 전지 3장 이하 2장 이상 규격 5점 이상 납품봉안
- ③ 100만원 이상 디자인 완성 2건 이상
- ④ 각 과정의 학점 단위 4과목 이상(3학점 단위 4과목) 이수 확인 증명
- ⑤ 사설 학원 출강자
- ⑥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접속 횟수 기준(500회 이상)

## 3. 2)에서 추가로 제시한 분야의 증빙자료

- ① 촬영확인서, 출연확인서, 업체와의 계약서, 방송사(외주제작사) 사업자등록증
- ② 관련기관의 납품증명서, 봉안현황사진
- ③ 디자인 분야 계약서, 최종 디자인 사진, 통장사본
- ④ 관련 기관 종사자의 근무확인서
- ⑤ 학원설립허가증, 강사경력증명서
- ⑥ 매체제작사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매체제작 증명서

### [붙임3] 「예술인복지법」 예술활동증명 인정지침(안)

#### (1) 제3장 심의위원회 6-9조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3명에서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제8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복합 심의 및 특별 심의위원)** ① 예술 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제4장 14-23조 중 관련 부분

**제14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 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제15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①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 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자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②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스태프 중 별표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⑥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자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제16조(문학 분야 인정기준)** ①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②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

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③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주가 되고 교양·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한다)

④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잡지 등을 말한다.

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

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

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⑥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

⑦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⑧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①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④ 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⑤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제19조(무용 분야 인정기준)** ① ‘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②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0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① ‘연극’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이다.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청소년극, 교육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1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2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제23조(만화 분야 인정기준)** ① ‘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② 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팬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 [붙임4] 예술활동지수(안)

### 1. 제안 배경

- 대학에 대한 평가는 올바른 교육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千篇일률적 평가는 대부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함
- 그 대표적인 사례로 취업이 아닌 꿈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예술 분야마저 취업률로 평가하는 현실을 들 수 있음
- 대학 예술 관련 학과 평가의 결과가 교육의 결과와 일치하는 평가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가칭 예술활동지수의 개발이 필요함
- 이는 단순히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 결과를 면밀히 살펴 이후 보완 및 수정까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2. 예술활동지수(안)

- 예술전공자의 진로
  - 예술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스태프)
  - 예술교육(교수, 교사, 문화예술교육사, 학원 강사 등)
  - 예술 관련 산업체 취업(응용예술, 실용예술)
  - 예술적 창의력 활용 가능한 예술 비관련 취업
  - 예술과 무관한 취업(예술은 인문학적 소양)
- 조사 시기
  - 졸업 후 1년, 5년, 10년, 20년, 30년, 5차례 활동 여부 추적 조사(졸업생 대비 비율로 평가)

○ 양적 조사

- 예술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2차 조사부터는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활용 가능(물론 예술활동증명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므로 실제 상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음. 따라서 예술활동증명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료 제출의 경우 인정)
- 예술교육의 경우 현재로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하지만, 향후 예술인복지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그럴 경우 예술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과 동일한 상황이 됨
- 기타 취업의 경우 최소한 위에 명시한 3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질적 조사

- 예술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의 경우는 위의 양적 평가에 더하여 질적 평가에 의한 가산점 제도 병행이 바람직한데, 여기에는 수상, 초청, 공적 책임자 피선임, 베스트셀러, 대규모 흥행, 장기 흥행 등의 기준이 가능함

**3. 활용 방법**

- 우리나라 대학 예술전공자의 걱정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가운데 막연히 너무 많다는 평가가 나옴
- 대학 평가에서 취업률이 중요해지면서 예술 전공은 전체에 피해를 주는 문제아가 되고 말았음
- 그러나 예술 전공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함
- 위에 제안한 예술활동지수를 활용하면 예술전공자의 걱정 규모까지도 추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 교육단위들이 스스로 맞는 교육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임

# 예술계열 취업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통계연구센터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2014년 10월 인쇄

2014년 10월 발행

발행인 / 백순근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 (137-791)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

전 화 / (02)3460-0463

팩 스 / (02)3461-0139

등 록 /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쇄처 / 디자인팩킨 (031-893-8315~7)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